

2020. 6. 15. MON



법원행정처

목 차

contents

규칙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94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일부개정규칙	896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910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912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914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014
예규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016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1018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103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036
신법령목록		1038
인사		1046

공지사항

1051

규칙

●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98호 2020. 6. 1. 공포)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와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재판사무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21년 3월 1일 전에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이 재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u>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u> 각각 둔다.</p>	<p>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 ----- ----- ----- ----- ----- <u>울산지방법원 소재지와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u> 각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p>

◎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99호 2020. 6. 1. 공포)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을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녹음·청취의 허가”를 “녹음·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연장과정”을 “연장과정, 전기통신보관등 승인과정”으로 한다.

제2장 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허가업무”를 “허가 등 업무”로, 같은 조 중 “허가업무”를 “허가업무, 전기통신보관등의 승인업무”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이하 “승인청구서”라고 한다)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의 기재사항 외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과 선별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의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는 전기통신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심리를 위하여 승인청구서 제출 시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외에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 자료(이하 “통신내용자료”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분석·설명한 자료(이하 “통신내용분석자료”라고 한다)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는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괄호안의 내용 중 “처리상황카드”를 “허가처리상황카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① 승인청구서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가 직접 접수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이하 “승인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 및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 용지(이하 “승인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승인청구서 및 소명자료,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③ 승인청구서에는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 1통,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분 1통,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 부분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분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① 담당판사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이하 “승인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인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② 담당판사는 승인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승인서의 일부기각 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각 “처리상황카드”를 각 “허가처리상황카드”로, 같은 조 제1항 중 “적절한 조치”를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괄호안의 내용 중 “처리상황카드철”을 “허가처리상황카드철”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통신내용분석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분, 통신내용

자료 부분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철(이하 “승인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승인청구서를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분, 통신내용자료 부분과 함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철(이하 “승인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각 “처리상황카드”를 각 “허가처리상황카드”로, 같은 조 제1항 중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로,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상황카드철”을 “허가처리상황카드철”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각 “처리상황카드”를 각 “허가처리상황카드”로, 같은 조 제1항 중 “인계한다”를 “즉시 인계한다”로,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로,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상황카드철”을 “허가처리상황카드철”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분을 검찰청 담당 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분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청구서를 사본하여 승인서 용지, 전기통신 목록 부분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와 승인청구서 사본, 전기통신 목록 부분, 승인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승인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승인청구서 사본, 전기통신 목록 부분, 승인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승인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서를 사본하여 승인청구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분, 통신내용자료 부분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와 승인청구서, 승인서 사본,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분, 통신내용자료 부분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승인처리상황카드철에, 승인청구서, 승인서 사본,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분, 통신내용자료 부분을 승인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전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 경과 및 요지, 그 주체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가 이를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철에 편철한다.

제8조 중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로 하고, “제4조”를 “제4조 및 제4조의2”로 하며, “제7조의2”를 “제7조의5”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처리상황카드철”을 “승인처리상황카드철 및 승인청구서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철은 준영구적으로, 허가처리상황카드철”로 한다.

제10조의2 중 “제4조 내지 제10조”를 “제4조 내지 제10조(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각 “제13조제2항”을 각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현행

개정안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과 선별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의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는 전기통신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심리를 위하여 승인청구서 제출 시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외에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 자료(이하 “통신내용자료”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분석·설명한 자료(이하 “통신내용분석자료”라고 한다)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는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 ① (생략)
-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이하 “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용지(이하 “허가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유기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 ③ (생략)

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허가처리상황카드”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신설>

<신설>

개정안

제4조의2(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① 승인청구서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가 직접 접수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이하 “승인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 및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 용지(이하 “승인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 용지에 협의사실의 요지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승인청구서 및 소명자료,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③ 승인청구서에는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 1통,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분 1통,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 부분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분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① 담당판사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이하 “승인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인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② 담당판사는 승인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승인서의 일부기각 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현행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철(이하 “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이하 “허가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신설>

개정안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
----- 허가처리상황카드-----

-----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

② ----- 허가처리상황카드-----
-----.

③ ----- 허가처리상황카드-----
----- “허가처리상황카드철”-----

-----.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통신내용분석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분, 통신내용자료 부분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

현 행

개 정 안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철(이하 “승인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승인청구서를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분, 통신내용자료 부분과 함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철(이하 “승인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① -----
-----허가처리상황카드-----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
안유지조치-----

-----.
- ② -----허가처리상황카드

-----.
- ③ -----허가처리상황카드-
--허가처리상황카드철-----

-----.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현행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처리상황카드철에,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신설>

개정안

업무처리) ① -----
----- 허가처리
상황카드-----
----- 즉시
인계한다.----- 소명자료에 대
하여 보안유지조치-----

② ----- 허가처리상황카드

③ ----- 허가처리상황카드
—허가처리상황카드철-----

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

처리) ①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분을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분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청구서를 사본하여 승인서 용지, 전기통신 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록 부분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 카드와 승인청구서 사본, 전기통신 목록 부분, 승인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 카드를 승인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승인청구서 사본, 전기통신 목록 부분, 승인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승인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 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서를 사본하여 승인청구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분, 통신내용자료 부분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 카드와 승인청구서, 승인서 사본,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분, 통신내용자료 부분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 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
 방법원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4조,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업무를 처리한
 다.

제10조(보존기간) ① 처리상황카드철은 3년
 간, 허가청구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

② (생략)

제10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
 가청구사건의 처리)
제4조 내지 제10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
카드를 승인처리상황카드철에, 승인청구
서, 승인서 사본,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분, 통신내용자료 부분을 승인청구서
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
한다.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조의2제6
 항에 따라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전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 경
 과 및 요지, 그 주체 및 방법 등을 기재
 한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송
 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가 법
 원에 접수된 때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
가 이를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철에 편
철한다.

제8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
 -----제4조
 및 제4조의2-----제7조의5-----
 --.

제10조(보존기간) ① 승인처리상황카드철
및 승인청구서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
서철은 준영구적으로, 허가처리상황카드
철-----.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
 가청구사건의 처리)
제4조 내지 제10조(통신제한조치에 관한

현 행

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 처리절차에 준용한다.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전기통신사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필요한 자료의 범위’에는 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필요로 하는 자료의 종류, 필요로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제1항,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한 일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개 정 안

것에 한한다)-----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① -----
-----제13조제3항

-----.

② --- 제13조제3항-----

-----.

③ --- 제13조제3항-----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① -----제13조제3항-----

-----.

② (현행과 같음)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00호 2020. 6. 1. 공포)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5항 중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를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판장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의2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 ~ ④ (생략)</p> <p>⑤ 재판장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 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u>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u>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p> <p>〈<u>신설</u>〉</p>	<p>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u> -----.</p> <p>⑥ <u>재판장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의2를 준용한다.</u></p>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01호 2020. 6. 1. 공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제3조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부분은 제외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1항 본문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02호 2020. 6. 1. 공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자”를 “변호사, 교육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제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8조의2제1항”을 “법 제8조의2제2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공개대상자”를 각각 “등록의무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의2제5항”을 “법 제8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를 “전보 등이 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 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②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 모두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부서별 제한되는 주식의 업종 등 종류
3.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4.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위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문”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가정법원장, 지방법원”을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제35조 중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하고, “법 제17조제1항 본문”을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로 한다.

제37조제3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37조의5의 제목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를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18조의4제2항”을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별지 제58호서식”을 “별지 제58호서식 및 제58호의1서식”으로 하고, “신고자 및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으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청탁·알선”을 각각 “청탁 또는 알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항 중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제37조의6 본문 중 “공개할 수 있는”을 “공개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심사 결과”를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로 한다.

제37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

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각각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로 하고 “징계의결의 요청이나”를 각각 “징계의결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의3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6.4.>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등록의무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직급 등)	재산등록기준일
	주소(자택)	거주형태
	주소(직장)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재산등록사항	그 밖의 사항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 <input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input type="checkbox"/> 증권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채무 <input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type="checkbox"/> 보석류 <input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type="checkbox"/> 회원권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type="checkbox"/>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input type="checkbox"/> 재산등록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친족 등록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승진]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기재요령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거주형태는 ‘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부모집, 친척집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대상	직업	비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자녀 없음

기재요령

-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십시오.
※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 대상이 아님
-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등록대상’란: 배우자,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란: 직장명·직위, 학교명·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나 거주형태(예: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를 기재하십시오.

2. 최초재산등록신고 총괄표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종류	가액 (실거래가격)	형성과정	비고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소계)						
				()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 건물(소유권·전세권)(소계)						
				()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보험 포함)(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소계)						
			비상장주식 (법 제4조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 보석류(소계)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종류	가액 (실거래가격)	형성과정	비고

▶ 회원권(소계)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사항						
총계						

기재요령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 ① 토지 :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
- ② 건물 :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 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 ④ 현금(수표 포함)
- ⑤ 예금(보험 포함) :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 ⑥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⑦ 증권 : 예탁기관 · 종목명 · 보유량 등을 기재하십시오[예 :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 ⑧ 사인 간 채권 : 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 · 전화번호 등)를 기재하십시오.
- ⑨ 채무 :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 · 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 ⑩ 금 · 백금 : 종류 · 함량 · 중량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⑪ 보석류 : 보석의 종류 · 크기 · 색상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⑫ 골동품 · 예술품 : 종류 · 크기 · 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⑬ 회원권 : 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⑭ 지식재산권 : 명칭 · 등록번호 · 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 ⑮ 합명 · 합자 ·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 출자가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 ⑯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 · 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 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비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 독립생계유지, 2007. 3.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 · 건물)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임차권) · 사실상 소유권 · 분양권 등
 - 부동산에 준용하는 권리 : 자동차 · 광업권 · 어업권 · 건설기계 · 선박 · 항공기
 - 현금 : 자기앞 수표 포함
 - 예금 :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예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증권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국채 · 공채 · 회사채 · 백지신탁 · 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 · 백금 : 금 · 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 도자기 · 서양화 · 동양화 · 서예 · 공예 · 수예 · 조각 · 칠기 등
 - 회원권 :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등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4. 가액
- '가액'란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 등 평가액을 등록하고,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등록하되 재산항목별 최초재산등록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5.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 · 건물), 증권 중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기재하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 '지목'란 기재요령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 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 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3. 부동산

나. 건물(소유권·전세권·분양권 등)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건물 면적 (㎡)	대지 면적 (㎡)	종류 및 용도	가액 (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며,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기재하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 '종류 및 용도'란 기재요령
 - 종류 : 일반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대지가액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다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무허가건물의 경우
 -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기재하십시오.
-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 항목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 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하십시오.
- '권리의 명세'란 기재요령
 - 광업권·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 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건설기계: 기종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선박: 종류·용도·선박 명·총 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항공기: 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기재하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을 기재하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보유액(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된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예금(보험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 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회, 상조회 불입금도 신고대상입니다.
 - 사실상 등록대상자 소유가 아니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친목회비, 동창회비 등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등 한 통장으로 여러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6. 외화예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3.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재하십시오.
4.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증권의 종류	예약기관 (법인명)	발행인 (종목명)	행사가격	수량	가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계좌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목코드	행사기간				
			비상장주식 (법 제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소유자별 증권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하십시오.
- '증권의 종류'란 기재요령
 -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예약기관(법인명)' 및 '계좌번호(법인등록번호)'란: 증권액의 종류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액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기재하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 '종목코드'란: 증권액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07. 1. 1. ~ 2008. 12. 31.): 증권액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액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지급받을 주식액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기재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계약 체결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하며, 다음 변동신고 시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된 사항을 등록하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9.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	관계	채권의 종류	채권액 (천원)	발생일	만기일	채무자		형성과정	비고
							채무자명	주소		
			사인 간 채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
3.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기재하십시오.
4.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의 전세권(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9.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5. 사인 간의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계약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0.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	관계	채무의 종류	채무액 (천원)	계좌 번호	발생일	만기일	채권자		형성과정	비고
								채권자명	주소		
			사인 간 채무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
3.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4.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5.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이 곳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6.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계약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함량	보유중량 (g)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기재하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크기	색상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작품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품명	크기 (cm)	작가	제작 연대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종류'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유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cm)로 기재하십시오.
-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소재지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분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란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 회원권은 취득가액을 '가액'란에 기재하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재하십시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등록대상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소유만 하고 소득이 없는 것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3. '종류'란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병·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	관계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출자가액	회사연간 매출액(천원)	형성과정	비고
			소재지	영업종류	설립일	출자지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출자가액'란에는 출자한 금액을, '출자지분'란에는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기재하십시오.
 - 합병·합자·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이 항목의 기재대상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하여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항목에 등록하십시오.(상점에 있는 상품, 가축 등은 등록대상이 아니나 재산변동 사항의 소명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로 등록 가능)
3.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6. 4.>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

1. 거래 기본정보

일련 번호	종목명	소유자	관계	매매계약일	매매수량	1주당 매매가액 (천원)	제3자 거래여부	비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기업 일반정보

법인명		발행주식총수	
법인등록번호		1주당 액면가(원)	

첨부서류 |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신고자료 1부

작성방법

-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십시오.
-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별로 작성하십시오.
 - 이 때 이해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동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종목명’란: 해당 비상장주식의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 ‘매매계약일’란: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매도 또는 매입)에 한하며,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계약일을 기재하십시오.
- ‘1주당 매매가액’란: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1주당 매매가액(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한 가액)을 적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신고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당 매매가액(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한 가액)이 1주당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를 적고, ‘비고’란에 액면가임을 기재하십시오.
- ‘제3자 거래여부’란: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를 한 경우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주식총수’란: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0. 6. 4.>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1. 평가대상 기업 일반정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① 발행주식총수	
사업개시일		1주당 액면가(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표시)

- Ⓐ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2.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

② 자산총액			
③ 부채총액			
④ 순자산가액(②-③)			
	최근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직전전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⑤ 당기순이익 또는 환산 당기순이익			
⑥ 발행주식총수			
⑦ 1주당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별 ⑤÷⑥)	⑧	⑨	⑩

3.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⑪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⑧×3/6+⑨×2/6+⑩×1/6)			
⑫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⑪÷「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 조에 따른 이자율)			
⑬ 1주당 순자산가치(④÷①)			
⑭ 1주당 평가액(⑫×3/5+⑬×2/5)		비고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의4서식(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1부

작성방법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십시오.
2. 발행주식총수(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재하십시오.
3. 자산총액(②):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재하십시오.
4. 부채총액(③):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기재하십시오.
5. 당기순이익(⑤):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합니다.
 - '최근 사업연도'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6. 발행주식총수(⑥):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기재하십시오.
7. 1주당 당기순이익(⑦): 최근 3개 사업연도별 ⑤란의 금액을 ⑥란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8.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⑪): {(⑧×3)+(⑨×2)+(⑩×1)}÷6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그 값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하십시오.
9.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⑫): ⑪란의 금액을 10%(「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10. 1주당 순자산가치(⑬): 순자산가액(④)을 발행주식총수(①)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11. 1주당 평가액(⑭): {(⑫×3)+(⑬×2)}÷5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1주당 평가액(⑭)이 1주당 순자산가치(⑬)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A~B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B란의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십시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당 평가액(⑭)이 1주당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를 적고, '비고'란에 액면가임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0. 6. 4.>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신고인 (등록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1. 기업 일반정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① 발행주식총수	
사업개시일		1주당 액면가액	

2. 기업 재무정보

② 자산총액			
③ 부채총액			
	최근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직전전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④ 당기순이익			
⑤ 발행주식총수			

3.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표시)

가.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input type="checkbox"/>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input type="checkbox"/>

4. 첨부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상법」제447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말함)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공직자 재산신고를 위한 정보를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인)

작성방법

1. 발행주식총수(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재하십시오.
2. 자산총액(②):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재하십시오.
3. 부채총액(③):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기재하십시오.
4. 당기순이익(④):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이 때 ‘최근 사업연도’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5. 발행주식총수(⑤):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6.4.>

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

등록의무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직급 등)	재산등록기준일	
	주소(자택)	거주형태	
	주소(직장)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재산 변동 사항	그 밖의 사항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 <input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input type="checkbox"/> 증권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채무 <input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type="checkbox"/> 보석류 <input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type="checkbox"/> 회원권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type="checkbox"/>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input type="checkbox"/> 재산변동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친족 등록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신고 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기변동 <input type="checkbox"/> 퇴직 <input type="checkbox"/> 의무면제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input type="checkbox"/>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기재요령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거주형태는 '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부모집, 친척집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	관계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대상	등록 제외	직업	변동 사유	비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자녀 없음

기재요령

- 출생·사망·결혼·이혼·입양 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부양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란 :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등록제외’란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 표시를 하십시오.
- ‘등록대상’란 : 등록제외가 아닌 배우자, 등록제외나 고지거부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 ‘직업’란에는 직장명·직위, 학교명·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친족사항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예 : 출생, 사망, 이혼, 입양 등)
- ‘비고’란에는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이거나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 또는 거주형태를 기재하십시오(예 : 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 종류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형성과정	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 가격)	감소액 (실거래 가격)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소계)									
					()	()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			
▶ 건물(소유권·전세권)(소계)									
					()	()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보험 포함)(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소계)									
			비상장주식 (법 제4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 ·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	()			
▶ 보석류(소계)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 종류	중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형성과정	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 가격)	감소액 (실거래 가격)			
▶ 회원권(소계)									
					()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									
총계									증감액: (가액 변동:)

기재요령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① 토지 :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
 - ② 건물 :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 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 ④ 현금(수표 포함)
 - ⑤ 예금(보험 포함) :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 ⑥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⑦ 증권 : 예탁기관·종목명·보유량 등을 기재하십시오[예 :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 ⑧ 사인 간 채권 : 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를 기재하십시오.
 - ⑨ 채무 :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 ⑩ 금·백금 : 종류·함량·중량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⑪ 보석류 : 보석의 종류·크기·색상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⑫ 골동품·예술품 :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⑬ 회원권 : 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⑭ 지식재산권 : 명칭·등록번호·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 ⑮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 출자가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 ⑯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 독립생계유지, 2007. 3. 3.).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란에 등록제외 사유, 등록제외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 사망, 2007. 5.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건물) : 소유권·지상권·전세(임차권)·사실상 소유권·분양권 등
 - 부동산에 준용하는 권리 : 자동차·광업권·어업권·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 현금
 - 예금(보험 포함) :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예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증권 :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백금 : 금·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철기 등
 - 회원권 :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4. 종전가액 : 종전 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액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6. 현재가액 :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건물), 증권 중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하여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유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8. 변동사유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 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십시오.
9. 총계
- 재산항목별 소계를 합산하여 기재하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지번분할·합병 등으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기재하십시오.
- '지목'란 기재요령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기재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되,
 -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패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사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다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지·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3. 부동산

나. 건물(소유권·전세권·분양권 등)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종류 및 용도	대지 면적 (㎡)	건물면적(㎡)				가액(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중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중전	증가	감소	현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증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 '종류 및 용도'란
 - 종류: 일반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매매·상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고, '실거래가액'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매·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중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패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중전가액을 "공시가격"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중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공시가격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패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9. 채무"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지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하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기재요령
 - ① 광업권·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② 자동차: 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③ 건설기계: 기종 명·제조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④ 선박: 종류·용도·선박 명·총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⑤ 항공기: 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어업권: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종전가액을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액을 확인하여 증감을 기재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액을 기재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위의 해당하는 평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존속기간 만료·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공유',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하십시오.
7.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보유액(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종전 신고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란이나 '감소'란 및 '현재'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현금총액은 '종전'란에 기재하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란 및 '현재'란에 그 총금액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기재하고, 증감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6. 예금(보험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개설일	만기일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기재하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회, 상호회 불입금도 신고대상입니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예금총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예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가 및 현재보유액을 기재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5.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십시오.
6. 파생상품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7.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예금 항목 '소개'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8. 외화예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9.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특기사항
			예금의 종류	개설일	만기일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 보유액’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 금액을 기재하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4.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재하십시오.
5.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증권의 종류	예탁 기관 (법인명)	발행인 (종목 명)	행사 가격	수량				가액(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계좌 번호 (법인등 등록번호)	종목 코드	행사 기간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비상장주식 (법 제4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 ① 신규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증권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주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3. 종전 신고 시에는 함께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함께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4. '증권의 종류'란 기재요령
 -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5. '예약기관(법인명)' 및 '계좌번호(법인등록번호)'란: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6. '발행인(종목명)'란 :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기재하고, 주식(주식매수선택권 포함)인 경우 종목명(예 :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7. '종목코드'란 :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8.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 2007. 1. 1. ~ 2008. 12. 31.) :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9. 가액산정방법
 - ①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 ②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 ④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 제6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지급받을 주식의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10. 전년도까지 신고된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1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증권의 종류(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를 달리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12.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기재하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13. 변동신고기준일 이전(최초 신고인 경우에는 최초신고기준일 이후)에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동신고 시에 '증권의 종류'란에는 백지신탁으로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기재하십시오.
14.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증권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15.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매도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및 행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9.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	관계	채권의 종류	채권액(천원)				발생일 만기일	채무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채무자명	주소		
			사인 간 채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기재하십시오.
3. 신규 채권이 발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신고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채권의 총액은 '종전채권액'란에 기재하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현재 채권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5.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9.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6.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약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채권 환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채권을 환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8.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10.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	관계	채무의 종류	채무액(천원)				계좌번호		채권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발생일	만기일	채권자명	주소		
			사인 간 채무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채무액'란 및 '현재채무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4. 현 보유채무액을 '현재채무액'란에 기재하십시오.
5.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6.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7.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8. '변동사유'란에는 채무의 용도를 기재하십시오.
9.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채무를 상환한 경우에 한함)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채무 상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소득원: 채무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의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수량	보유중량(g)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을 새로 보유하고(종전에 5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된 경우 포함) 이미 등록된 금·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보유중량'란에 기재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의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기재하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4. 같은 수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보유중량'란이나 '감소보유중량'란 및 '현재보유중량'란에 기재하십시오.
5. 가액산정방법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매한 경우에는 실패입액을 기재하고,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패도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패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중량과 곱한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② 미거래로 실패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크기	색상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보석류가 감소된 경우에 등록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 ①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기재하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 ②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5. 실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작품 명세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품명	크기 (cm)	작가	제작 연대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골동품 또는 예술품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cm)로 기재하십시오.
6. 가액산정방법
 - ①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기재하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 ②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7.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소재지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증 전	증 가	감 소	현 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가액산정방법
 - ①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매도 시에는 증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실패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 ②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기재하되,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재하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
4.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종류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매도·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	관계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변동사항				형성과정	변동 사유	
			소재지	영업종류	설립일	출자 가액		출자 지분				회사연간 매출액 (천원)
						종전	현재	종전	현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의 출자가액·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4.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기재하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안에 함께 기재하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기재하십시오.
7. 출자일자·출자경위, 그 밖에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출자지분 회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회수 목적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6. 4.>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앞쪽)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 목적 :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에 관한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
3. 정보제공 범위
 - 재산 등록·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
 - 부동산 보유·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기간 : 재산 등록·신고기간 중
4. 등록의무자(정보제공요청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직위	성명

5. 동의자(등록의무자 포함)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여부		동의확인(서명)
			금융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신고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참고 사항

- 본 동의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뒤쪽과 같습니다.
- 동의여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중 제공을 원하는 부분의 “√” 표시를 하십시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뒷쪽)

정보 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은행법」에 따른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회·공단 등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6. 4.>

재산등록 현황 보고서(분기)

기관명	작성기준일
-----	-------

1.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

구분	의무자				등록자				미등록자				미등록 현황				
	전 분 기	이번 분기			전 분 기	이번 분기			전 분 기	이번 분기			계	법정신 고기간 미도래	법정 신고 기간 초과	기간 연장	신고 유예
		계	공 무 원	유관		계	공 무 원	유관		계	공 무 원	유관					
합계	00 (00)	00 (00)															
대법관등																	
법원행정 처장																	
법원장등																	
고법부장 판사																	
지법부장 판사																	
판사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1급 및 상당																	
2급 및 상당																	
...																	

기재 요령

1. 법정신고 기간: 최초등록의무자는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2. 재산공개 대상자는 ()안에 함께 기재함.
3. 의무면제자, 퇴직자, 신고면제자 등은 제외함

2. 재산등록의무자 증감 내용

전 분기	이번 분기 총계	증가 사항(+)			감소 사항(-)			
		신규등록자	재등록자	전입자	의무면 제자	퇴직자	전출자	신고면제자
00 (00)	00 (00)							

기재 요령

- 1)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증감사항을 기재함.
- 2) 재등록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사람임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 3) 등록서류이관자는 등록기관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등록서류 모두를 받거나 보낸 사람임.
- 4) 재산공개대상자는 () 안에 함께 기재함.
- 5) 신고면제자는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람임.
- 6) 재산등록의무자 변동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재산 등록 의무자 변동 내용 〉

연번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신분변동 사유	신분변동 발생일	등록 (이관일)	비고

기재 요령

※ 신규등록자, 재등록자, 등록서류이관자(전입, 전출), 의무면제자, 퇴직자, 승진자(2급→1급, 4급→3급), 사망자의 변동내역을 기재함.

3.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

구분	계	유예 연수별			유예 사유별			비고
		1년	2년	3년	재외공관,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	외국파견	휴직	
총 유예자수								
전 분기 유예자수								
이번 분기 유예자 수	증가							
	감소							

※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내역을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변동 내용 〉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유예 사유	발생 및 종료일	유예년도		비고
							년부터	년까지	

기재 요령

- 1) '구분'란에는 유예자의 "증가" 또는 "감소"로 기재
- 2) 발생 및 종료일 : 인사발령일을 기재
- 2) '유예년도'란에는 정기변동신고 및 의무면제자신고의 유예를 받는 연도를 기재
- 2) '비고'란에는 '정기변동' 또는 '의무면제'로 구분하여 기재

4. 정기변동사항 신고현황

구분 직급 등	의무자	신고자	미 신고자 현황						비고
			계	기간 연장	신고 면제자	1·2월 중 최초 등록	12월 중 최초 등록	신고 유예	
계									

기재 요령

- 1) 정기변동사항 신고는 전년도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신고로서 3월 중 재산등록현황 보고 시에만 작성함(「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
- 2) 미신고자현황명단을 별도로 붙임.
- 3) 재산공개대상자는 () 안에, 임기제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6. 4.>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기관명		작성기준일				
구분	계	① 정기변동 신고자	② 신규 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 면제자	⑤ 퇴직자
⑥ 심사대상						
심사 결과	⑦ 이상없음					
	⑧ 실무종결					
	⑨ 보완명령					
	⑩ 경고 및 시정조치					
	⑪ 해임·징계의결요구					
	⑫ 과태료 부과					
	⑬ 해임·징계의결요구(법제22조)					
심사 내용	⑭ 소명서 요청					
	⑮ 출장조사					
	⑯ 개별자료요청					
	⑰ 출석요구					
	⑱ 조사의뢰					
	⑲ 금융조회					

작성 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만 해당함.
- ⑦ 이상없음: 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의 수
- ⑧ 실무종결: 재산심사결과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의 수
- ⑨ 보완명령: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의 수
- ⑩ 경고 및 시정조치: 법 제8조제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 ⑪ 해임·징계의결요구: 법 제8조제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 ⑫ 과태료 부과: 법 제8조제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 ⑬ 해임·징계의결요구(법 제22조): 법 제8조제2 및 제22조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 ⑭ 소명서요청: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 ⑮ 출장조사: 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의 수
- ⑯ 개별자료요청: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⑰ 출석요구: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 ⑱ 조사의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 ⑲ 금융조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 ⑨~⑬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1. 보완명령 대상자

소 속	직 위(직급 등)	성 명	보완요구내용	비 고
	()			

※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 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2. 법제22조요구 대상자(⑩~⑬에 해당하는 사람)

소 속	직 위(직급 등)	성 명	위반내용	조치요구내용	비 고
	()				

※ 조치요구내용: 법 제8조제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6. 4.>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앞면)

대상자	성명(한글)	(한자)
	소속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주소	

연번	재산 종류	재산 내용	증빙 자료	비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유의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뒷면)

소명 내용

기재 요령

-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최근 5년간)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토지·건물) : 취득(매도)일자, 취득(매도)금액, 취득(매도)경위, 취득당시 주소(거소), 자금원(사용처) 등
 - 자동차 등 : 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자금원(자금사용처) 등
 - 현금 : 취득시기, 자금원(자금사용처), 보유사유 등
 - 예금 : 주요자금원(주요사용처) 등
 - 증권 : 취득경위, 자금원(사용처) 등
 - 사인 간 채권 : 자금원(회수 시 자금사용처), 채무자와의 관계 등
 - 채무 : 자금사용처(채무이행 시 자금원), 채권자와의 관계 등
 -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 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경위, 자금원(사용처) 등
 - 출자지분, 출연재산 : 시기, 경위, 자금원 등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6. 4.>

증빙자료 대체소명서

대상자	성명(한글)	(한자)
	소속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주소	

대체 소명 내용

재산의 종류	
재산 내용 (소재지, 가액 등 권리명세)	
대체 사유	
소명 내용	※ 반드시 거래상대방을 기재(성명, 연락처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유의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6. 4.>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소속		직위	성명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
	▶ 건물(소계)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현금(소계)		
	▶ 예금(보험 포함)(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소계)		
	▶ 채권(소계)		
	▶ 채무(소계)		
	▶ 금 및 백금(소계)		()
	▶ 보석류(소계)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회원권(소계)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사항		
		총계	

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법원행정처장 귀하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

1. 소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토 지
 - 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을 기재하십시오.
- 건 물
 -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을 기재하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어업권·자동차·항공기·선박·건설기계 등을 기재하십시오.
- 동 산
 - 현금·수표·예금(파생상품중거금 포함)·「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
 - 증권: 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골동품·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을 기재하십시오.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3.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건물: 주택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명·동·호수 생략
예) A시 B동 C아파트 1동 100호 → A시 B동 아파트/A시 B동 123번지 → A시 B동
-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금의 합계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개인별·종목별로 수량을 기재하고 합계액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출자금액·지분비율 및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출연재산·보유직위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5. 그 밖의 사항

- 재산의 취득일자·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마십시오(친족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와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0. 6. 4.>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소속		직위		성명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	()		
▶ 건물(소계)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현금(소계)							
▶ 예금(보험포함)(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소계)							
▶ 채권(소계)							
▶ 채무(소계)							
▶ 금 및 백금(소계)				()	()		
▶ 보석류(소계)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회원권(소계)				()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사항 및 등록제외 사항							
총계							총감액: (가액변동)

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법원행정처장 귀하

297mm×210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

1. 소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의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고지거부 및 등록제의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등록제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토지
 - 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을 기재하십시오.
 - 건물
 -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을 기재하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어업권·자동차·항공기·선박·건설기계 등을 기재하십시오.
 - 동산
 - 현금·수표·예금(파생상품증거금 포함)·「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
 - 증권 : 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골동품·예술품 :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을 기재하십시오.
 - 회원권 :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지식재산권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3. 소재지·면적 등 권리의 명세
 -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회사명, 출자금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증감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출연재산·보유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십시오.
4. 종전가액 : 종전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액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6. 현재가액 :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총계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년대비 증감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가액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변동분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8. 변동사유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기재하십시오.
 - 예금 및 증권이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 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십시오.
9. 그 밖의 사항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마십시오(친족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아파트 이름·동·호수 등).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와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6. 4.>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

신청인	성명	(한글)	소속	직위 (직급 등)	()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
	주소				

담당직무 내용	<p>※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p>
------------	--

심사청구 사유	<p>※ 보유주식과 위 담당직무의 관련성 유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기재</p>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망(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송달받는 것을 (동의[] / 부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 직무관련성 여부

순번	소유자	내용
1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행 기관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 관련 여부
	관련여부	
2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관련 여부
	관련여부	
3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특허 관련 여부
	관련여부	
4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관련 업무
	관련여부	
5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감독 관련 여부
	관련여부	
6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관련 여부
	관련여부	
7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생 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
	관련여부	
8	기타	

기재 요령

위의 관련사항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적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3. 제출자료

구분	제출자료 내용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	(1) (2) (3) (4) (5)
2. 보유주식 관련 자료	(1) (2) (3) (4) (5)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	(1) (2) (3) (4) (5)

기재 요령

1. 담당직무내용 관련 자료 : '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 자료 :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은 잔고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 :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인가·허가·면허·특허, 조세의 조사부와·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

■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 6. 4.>

주식

[]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지연사유서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신청인	성명	(한글)	소속	직위 (직급 등) ()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주소			
심사청구 기준일	<p>① 법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 ()</p> <p>②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p> <p>③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p> <p>④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p> <p>⑤ 직무(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p> <p>⑥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p> <p>⑦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변경이 완료된 날 ()</p> <p>⑧ 새로운 주식을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날 ()</p> <p>⑨ 법 제14조의6제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 ()</p> <p>※ 위의 해당되는 ()에 “√” 표시</p> <p>[기준일] 년 월 일</p> <p>※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지연 사유	<p>※ 주식의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또는 심사청구를 지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p>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된 지연사유에 대하여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0. 6. 4.>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
-----	----	----	---------------------

해지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4.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영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5.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 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 <p>※ 위의 해당되는 ()에 “√” 표시</p>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0. 6. 4.>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순번	계약해지자			수탁가액 (천원)	변동가액 (천원)	비고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			
			()			
			()			
			()			
			()			

해지사유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4.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영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5.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 ※ 위의 해당되는 ()에 “√” 표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당사와 체결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공직자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 요령

1.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2.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신탁재산액을 기재하십시오.
3. 변동가액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20. 6. 4.>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명세서

① 연번	② 기업체명	③ 업태	④ 대표자	⑤ 사업자등 등록번호	⑥ 소재지	⑦ 자본금 (억원)	⑧ 외형거래액 (억원)	⑨ 비고

작성방법

○ 기업체명을 “가, 나, 다”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47호의3서식] <개정 2020. 6. 4.>

영리사기업체 이외의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 작성기관 : >

연번	기관명	유형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외형거래액 또는 기본재산 (억원)	비고

작성방법

- 작성기관별로 해당 기관을 “가, 나, 다”순으로 적되,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 유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제6호 및 제8호에서 제11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유형을 명시하십시오.
- 외형거래액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범주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 기본재산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0. 6. 4.>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 락 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i>(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i>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 직위	
	취업 후 담당업무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별지 제50호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	---

기재 요령

-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요청인	경유 기관 법원 행정 처장	처리 기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요청인	접수	접수
	확 인 및 사 전 검 토	안건작성
	법원행정처장	제한여부 결정 (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통보

■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0. 6. 4.>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I.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II.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업체 (예정)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III. 검토 사항				
1. 취업심사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직급 등)	부서명 (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제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아) 그 밖에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있는지 여부
5.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업예정기관인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여부
6.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와 적다고 보는 이유를 작성)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상벌 관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등)

IV. 종합 검토 의견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0. 6. 4.>

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사실 <small>(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small>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기관 직위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작성자		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0. 6. 4.>

우선 취업 신청서

취업예정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 락 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기관 현황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우선취업 허가 신청사유	※ 증빙서류 첨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취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0. 6. 4.>

취업승인 신청서

(앞쪽)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	자택
	직위	락	휴대전화
	직급 등	처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i>(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i>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취업 후 담당업무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승인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및 근거 <i>※ 공직자윤리법의 시 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에 의한 취업승인 근 거 호수 기재</i>	근거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별지 제50호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	---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0. 6. 4.>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I.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II.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 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기재			
III. 검토 사항				
1. 취업심사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직급 등)	부서명(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제5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				
5.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7.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8.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IV. 종합 의견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기재요령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0. 6. 4.>

업무취급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퇴직일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퇴직 전 소속	전자우편주소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주소			
취업 (예정) 사실	기관명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		
	담당예정업무				
업무취급 승인요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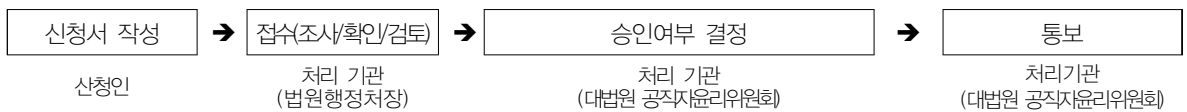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50호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업무취급승인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기재 요령

- ※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0. 6. 4.>

업무취급 승인신청에 관한 검토의견서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직급 등)
	퇴직일
취업예정 기관현황	기관명
	취업 예정 직위(직급 등)
	취업예정일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 내용
	담당 예정 업무
검토 사항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퇴직 전 2년 이내 근무기관의 업무(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p>(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p> <p>(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p> <p>(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에 관계되는 업무</p> <p>(아) 그 밖에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p> <p>4. 법 제18조의2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3 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업무취급을 승인할 수 있는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p> <p>5. 신청인이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p> <p>6.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관계 등)</p>
<p>종합 검토 의견</p>	
<p>첨부서류</p>	<p>1. 업무취급 승인신청서 2. 취업예정확인서 3. 기타 증빙자료 등</p>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0. 6. 4>

청탁·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탁·알선행위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퇴직 전 소속	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알선행위의 일시·장소, 내용(법 위반행위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청탁·알선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기타 증빙자료 등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8호의1서식] <신설 2020. 6. 4.>

청탁·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고대상	청탁·알선훈받은 재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청탁·알선훈한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직급	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알선훈의 일시·장소, 내용(법 위반행위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청탁·알선훈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 (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8호의2서식]<개정 2020. 6. 4.>

취업사실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직위(직급 등)	
	퇴직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취업일	취업경로	
과거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근무기간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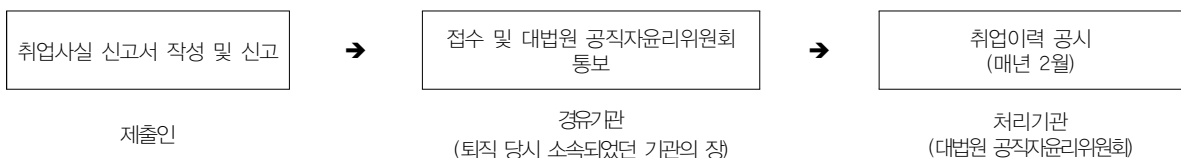
법원행정처장 귀하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기재 요령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0. 6. 4.>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년도)

1. 총괄표 (단위: 명)

기관명	조사 기준일	퇴직자 현황(명)					취업현황			
		계	해당연도 퇴직자	1년 전 퇴직자	2년 전 퇴직자	3년 전 퇴직자	계	취업승인	취업확인	임의취업

2. 해당연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취업		

3. 1년 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취업		

4. 2년 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취업		

5. 3년 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취업		

작성 요령

1. '해당 연도 퇴직자'는 조사연도 중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2. 1. 1. ~ 2012. 6.30. 동안 퇴직한 사람)
2. '1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1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1. 1. 1. ~ 2011.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3. '2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2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10. 1. 1. ~ 2010.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4. '3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3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09. 1. 1. ~ 2009.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5. '취업기관명'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 법인, 학교법인,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명을 기재하십시오.
6. '취업현황'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취업자 중 위원회 승인 또는 확인을 받고 취업한 자와 임의로 취업하여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0. 6. 4.>

연차보고 자료 (년도)

기관명	작성기준일
-----	-------

1.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구분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	② 신규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면제자	⑤ 퇴직자 (신고면제자 포함)	⑥ 재산등록이 관자(전입)	⑦ 재산등록이 관자(전출)	⑧ 해당연도 등 등록의무자
⑨계								
대법관등								
법원행정 처장								
법원장등								
고법부장 판사								
지법부장 판사								
판사								
법원공무원교 육원장								
1급 및 상당								
2급 및 상당								
...								
비고								

기재 요령

재산공개대상자는 () 안에, 임기제공무원은 <) 안에 함께 기재함.

-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임.
등록의무자 통계의 변동요인인 ② ~ ⑦ 항목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의무발생일(신분변동일)을 기준일자로 함.
- ② “신규등록자”는 신규임용, 승진으로 등록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③ “재등록자”는 등록의무자가 전보·강임·강등·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하였다가 3년(퇴직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를 말함.
- ④ “의무면제자”는 보고서 작성 기준연도에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강임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사람을 말함.
- ⑤ “퇴직자”란 퇴직하여 변동신고의무가 생긴 사람과 신고면제자를 말하며 공직유관단체로 사실상 전입·전출을 한 경우는 제외함.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신고면제 : ○명”으로 표기)
등록의무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록대상인 경우)으로 갔을 때는 ⑦재산등록이관자(전출)의 해당직급 등의 란과 ⑥재산등록이관자(전입)의 ‘공직유관단체’란에 동시 기재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시 기재함.
- ⑧ “해당 연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이며, 그 다음 해 1월 중 정기변동신고 대상자 수를 ‘비고’란에 기재함.
- ⑨ ‘계’란은 (①+②+③+⑥) - (④+⑤+⑦) = ⑧당해연도 등록의무자라는 등식이 성립됨을 원칙으로 하되, 불일치의 경우는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함.
- ⑩ ‘특정직’란은 일반직 직급에 준하여 직급 구분이 가능한 직종(예 : 연구관, 지도관, 장학관등)은 직급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일반직 직급과 다른 검사·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직종별 계급체계에 맞추어 구분하여 기재함.

※ ② ~ ⑦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가. 신규등록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신규등록사유	의무발생일

나. 재등록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직전 신분		의무발생일
			소속	직위(직급 등)	

다. 의무면제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의무면제사유	신분발생일

라. 퇴직자(신고면제자 포함)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의무발생일	비고

※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사망 등 사유 기재

마. 재산등록이관자(전입)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입 전 신분		전입일자
			소속	직위	

바. 재산등록이관자(전출)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출 후 신분		전출일자
			소속	직위	

2. 등록사항 심사현황

구분	계	① 정기변동 신고자	② 신규 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면제자	⑤ 퇴직자
⑥ 심사대상						
심사 결과	⑦ 이상없음					
	⑧ 보완명령					
	⑨ 심사결과외 처리요구					
심사 내용	⑩ 소명서 요청					
	⑪ 출장조사					
	⑫ 개별자료요청					
	⑬ 출석요구					
	⑭ 조사의회					
⑮ 금융조회						

기재 요령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이며, 1명에 대하여 신규등록·퇴직 및 의무면제 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함.

⑦ 이상 없음 : 재산심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

⑧ 보완 명령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

⑨ 심사결과외의 처리요구 : 법 제8조의2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사람

⑩ 소명서 요청 :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⑪ 출장 조사 : 물건 소재지나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

⑫ 개별자료요청 :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⑬ 출석 요구 :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⑭ 조사 의뢰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

⑮ 금융 조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가. 보완 명령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보완요구내용	비고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조치를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 내용을 기재

나. 심사결과의 처리요구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위반내용	조치요구 내용	윤리위 결정	비고

※ '조치요구 내용'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결정'란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 연장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연장기간(일수)	연장사유

※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을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 현황

계	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 고지거부	직계존속만 고지거부	직계비속만 고지거부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 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 거부한 직계존속·직계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거부한 재산등록의무자 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 현황

구분	계		열람		복사		비고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본인신청							
소속 기관장이 비위사건 관련여 부 판단 필요							

6.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

가. 계급별

구분	전년도 말 유예자 수	해당 연도 말 유예자 수	해당 연도 변동	
			증가	감소
계				
대법관등				
법원행정처장				
법원장등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판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급 및 상당				
2급 및 상당				
3급 및 상당				
4급 및 상당				
5급 및 상당				
비고				

※ 재산공개대상자의 수는 () 안에, 임기제공무원의 수는 < > 안에 각각 함께 기재함.

나. 기간별·사유별

유예 연수 별				유예 사유별						비고
계	1년	2년	3년	계	재외공관 근무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	교육파견	휴직	기타	

○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하여 기재함

7. 그 밖의 의견 또는 건의사항

■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20. 6. 4.>

해임·징계 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소속	주소
해임·징계 의결 요구 사유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2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위원회의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u>교육자</u>,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p> <p>③ ~ ④ (생략)</p> <p>⑤ <신설></p>	<p>제2조(위원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변호사</u>, <u>교육자</u>, ----- ----- -----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2항과 제4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p>1. <u>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u></p> <p>2. <u>판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u></p> <p>3. <u>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u></p> <p>4. <u>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u></p>
<p>제8조(위원회의 운영)</p> <p>① ~ ② (생략)</p> <p>1. (생략)</p> <p>2. <u>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u></p>	<p>제8조(위원회의 운영)</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8조의2제2항</u>----- ----- <u>제6항</u>-----</p>

현 행

에 대한 통보

- 3. ~ 4. (생 략)
- ③ ~ ⑤ (생 략)

제26조(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공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1. (생 략)
- 2.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 3. (생 략)
- 4. 공개대상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 5. (생 략)
- ② ~ ⑤ (생 략)

제30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법원행정처를 거쳐 위원회에 고지

개 정 안

- 3. ~ 4.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 ----- 등록의무자-----

-----.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8조의2제6항-----

- 3. (현행과 같음)
- 4. 등록의무자-----

- 5.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

현행

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부터 1개월 이내

가. 전보 등이 된 날

나.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② ~ ⑥ (생략)

<신설>

개정안

-----.

1. ~ 5. (현행과 같음)

6. -----
----- 전보 등
이 된-----

<삭제>

<삭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 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②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 모두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 ① (생 략)
- ②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취업이 제한 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제한기관
 - 가. ~ 나. (생 략)
 -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법자문법률사무소
- ③ (생 략)
- ④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 1. ~ 2. (생 략)
- ⑤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

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취업심사대상기관”-----
- 1. (현행과 같음)
- 2. -----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외국 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단
-----서-----

- 1. ~ 2. (현행과 같음)
- ⑤ -----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행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⑥ (생략)

⑦ (생략)

1. ~ 2. (생략)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가정법원장,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

⑧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에 각 취업제한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개정안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지방법원-----

⑧ -----
----- 취업심사대상기관-----
----- 취업심사대상기관-----

-- 취업심사대상기관-----

-----.

1. ~2.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① (생략)
-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3. (생략)
- ② ~ ③ (생략)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

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제3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 법 제18조제1항에 -----

제3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① (현행과 같음)
- 1. ----- 취업심사대상기관-----

- 2. -----

----- 취업심사대상기관-----

- 3.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

----- 취업심사대상기관-----
-----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

현행

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취업승인 신청)

- ① ~ ② (생략)
- ③ (생략)
- 1. ~ 2. (생략)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생략)
-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6. (생략)
- 7.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8. ~ 9. (생략)
- ④ ~ ⑤ (생략)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개정안

-----.

제37조(취업승인 신청)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 취업심사대상기관 -----
- 4. (현행과 같음)
- 5. ----- 취업심사대상기관 -----
- 6. (현행과 같음)
- 7. ----- 취업심사대상기관 -----
- 8. ~ 9. (현행과 같음)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

현 행

제56호서식의 업무내역을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의3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의5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신고자 및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개정안

--- 취업심사대상기관-----

-----.

② -----
취업심사대상기관-----

-----.

제37조의5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별지 제58호 및 제58호의1서식----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청탁 또는 알선-----소속 기관의 장-----
-----.

② -----소속 기관의 장-----
-----.

- 1. ~ 2. (현행과 같음)
- 3. -----
----- 청탁 또는 알선-----

현행

개정안

의 여부

4. (생략)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4. (현행과 같음)

③ 소속 기관의 장-----

-----.

1. ~ 2. (현행과 같음)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제37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 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소속 기관의 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 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제37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공개하여야 하는-----

현행	개정안
<p>다.</p> <p>1. (생략)</p> <p>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u>심사 결과</u></p> <p>3. ~ 4. (생략)</p>	<p>ㄱ.</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u></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37조의7(취업이력공시 등)</p> <p>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u>취업제한기관</u>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7조의7(취업이력공시 등)</p> <p>① ----- ----- <u>취업심사대상기관</u> ----- ----- ----- ----- ----- ----- ----- ----- ----- -----</p>
<p>② (생략)</p> <p>1. (생략)</p> <p>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u>취업제한기관명</u>,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p> <p>③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취업심사대상기관</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8조(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p> <p>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u>취업제한기관</u>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p>	<p>제38조(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p> <p>① ----- ----- <u>취업심사대상기관</u> -----</p>

현 행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
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개 정 안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
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
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
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 징계 의결의-----
-----.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 징계 의결의-----

-----.

③ (현행과 같음)

◎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03호 2020. 6. 1. 공포)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결격사유)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6조의3(결격사유) <u>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u></p>

예규

●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25호 2020. 5. 27. 결재)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나.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사유신고 시기 가. (생 략) 나. 예외적인 경우 (1) ~ (3) (생 략) (4) <u>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탁 급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u> (가) <u>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 각호</u> (나) <u>민사집행법 제256조에서 준용하는 같 은 법 제160조제1항 각 호</u> (다) <u>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 준용하는 같 은 법 제160조제1항 각 호</u> (라) <u>민사집행규칙 제156조제1항 각호</u>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액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때	2. 사유신고 시기 가. (현행과 같음) 나. 예외적인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26호 2020. 5. 29.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2조제1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을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2조제1항제1호 중 가목 3), 나목, 다목을”로 한다.

제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제4호”를 “제7호”로, “배우자,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 등의 소유는 소유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제3조의4를 제3조의7로 하고, 제3조의7(중전의 제3조의4) 중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별지 제1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행동강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의견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제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을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행동강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행동강령 제4조의6제2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금전의 차용 금지 등”을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로 하고, 본문 중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의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를 “행동강령 제15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기록 보관·관리) 소속 기관의 장은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6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8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10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1호의8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3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 소속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귀중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4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 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 인·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법 인·단체 소속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귀중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5 서식]

의견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의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6 서식]

업무 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 소속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귀중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7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		
확인 사항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 소속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8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해당 내역 없음

해당 내역 있음 (아래에 기재)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작성일자 : 20					
(소속 기관의 장) 귀중				신고인 :	(인)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9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input type="checkbox"/> 골프, <input type="checkbox"/> 여행, <input type="checkbox"/> 사행성 오락, <input type="checkbox"/> 식사음주 등의 향응,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여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원인, 즉 권원을 말함(예컨대, 매매, 임대차, 도급, 금전소비대차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단순 민원업무) 행동강령 제4조제1항의 단순 민원업무는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2조제1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p>	<p>제3조의2(단순 민원업무) -----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2조제1항제1호 중 가목 3), 나목, 다목을 ----.</p>
<p>제3조의3(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신 설></p>	<p>제3조의3(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① 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 등의 소유는 소유 명목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② ----- 제7호 ----- ----- 배우자의 직계존속----- ----- -----</p>
<p>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신 설></p>	<p>제3조의4(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p>

현행

개정안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행동강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의견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제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을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5(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4(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

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6(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행동강령 제4조의6제2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7(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별지 제1호의10서식 -----

현 행

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행동강령 제15조제 2항의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신 설〉

개 정 안

-----.

제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행동강령 제15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보관·관리)

소속 기관의 장은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6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8조를 준용한다.

◎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27호 2020. 6. 1. 결재)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및 7의2.를 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 서식부터 제2-7호 서식까지 서식을 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7. 수수료납부방법</p> <p>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u>등기부등·초본에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복합인증 요금계기에 의하여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이하 “영수필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항)</u>. 다만, <u>등기신청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납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납부,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납부 후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등기신청 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따른 사무처리지침」4.)</u>.</p>	<p>〈삭제〉</p>
<p>7의2. <u>전산등기부등·초본 수수료 수납의 특례</u></p> <p>가. <u>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부등·초본(이하 “전산등기부등·초본”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납하며 등기부등·초본에 ‘수수료 ○○원을 영수함’ 또는 ‘이 등본은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7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함’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항)</u></p> <p>나. <u>전산등기부등·초본을 재발급 또는</u></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수정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목록(별지 제2-1호~제2-6호서식)에 회수한 등기부등·초본을 첨부하여 재·수정발급목록 및 회수한 등본 등 편철장에 편철 보관한다. 다만, 등기부등·초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발급담당자는 사유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첨부한다.</p> <p>①재발급 처리현황[별지 제2-1호 서식, 수정발급 처리현황[별지 제2-2호 서식]</p> <p>②등기사항증명서 접수장(재발급) [별지 제2-3호 서식, 등기사항증명서 접수장(수정발급)[별지 제2-4호 서식]</p> <p>③인감증명서접수장(재발급)[별지 제2-5호 서식, 인감증명서접수장(수정발급)[별지 제2-6호 서식]</p> <p>다. 나.의 경우를 제외한 전산등기부등·초본에 대한 수수료 결손처리시 해당 등기부등·초본을 결손처리 전산 등·초본 편철장에 편철 보관한다.</p> <p>라.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나. 및 다.의 보관 등기부등·초본의 인증문구를 소인하여야 하며, 나.의 사유서(별지 제2-7호 서식)의 발급사유가 적정한지 확인한다.</p>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28호 2020. 6. 1. 결재)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현금으로”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전담등기소에 대하여 이 예규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7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 확정일자 의 부여, 정보 제공 수수료는 <u>현금으로</u>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 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7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 ----- ----- <u>현금이나 신용카드</u>로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신법령 목록

(2020. 5. 16. ~ 5. 31.)

법 률

법률제1725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19753	2020. 5. 19.	5
법률제17255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	"	"	10
법률제17256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1725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17258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1725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17260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17261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17262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	"	23
법률제1726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	"	24
법률제1726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	"	"	25
법률제1726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17266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 한 특별법	"	"	27
법률제1726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29
법률제17268호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30

법률제17269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753	2020. 5. 19.	31
법률제17270호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17271호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17272호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17273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	34
법률제1727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	"	35
법률제1727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36
법률제17276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6
법률제17277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7
법률제17278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	38
법률제17279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17280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1728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45
법률제1728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6
법률제17283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50
법률제17284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55
법률제17285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56
법률제17286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58
법률제17287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1728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62
법률제17289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3
법률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4

법률제17291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19753	2020. 5. 19.	68
법률제17292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	"	69
법률제17293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	"	70
법률제17294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71
법률제172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2
법률제1729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75
법률제17297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	"	77
법률제1729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9
법률제1729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0
법률제1730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80
법률제1730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	"	90
법률제17302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19758	2020. 5. 26.	5
법률제17303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	"	13
법률제17304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17305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17
법률제17306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17307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17308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	20
법률제17309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	21
법률제17310호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	22
법률제173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	22
법률제17312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26

법률제17313호	가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758	2020. 5. 26.	31
법률제1731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31
법률제17315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33
법률제17316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34
법률제17317호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35
법률제17318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6
법률제17319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1732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39
법률제1732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17322호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41
법률제17323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17324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	"	43
법률제17325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	45
법률제17327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	75
법률제17328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79
법률제17329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79
법률제17330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80
법률제17331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	"	81
법률제17332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92

법률제17333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758	2020. 5. 26.	93
법률제17334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94
법률제17335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5
법률제1733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96
법률제17337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	19761	2020. 5. 29.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678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9753	2020. 5. 19.	91
대통령령제3067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92
대통령령제3068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2
대통령령제30681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6
대통령령제30682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7
대통령령제3068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8
대통령령제3068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0
대통령령제30685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6
대통령령제30686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9
대통령령제30687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0
대통령령제30688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1
대통령령제30689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12
대통령령제3069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8

대통령령제3069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53	2020. 5. 19.	118
대통령령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	"	119
대통령령제30692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58	2020. 5. 26.	97
대통령령제30693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98
대통령령제30694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9
대통령령제30695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0
대통령령제3069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102
대통령령제30697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2
대통령령제3069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07
대통령령제30699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08
대통령령제3070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8
대통령령제30701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2
대통령령제30702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7
대통령령제30703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8
대통령령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9
대통령령제30705호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7
대통령령제3070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8
대통령령제3070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2
대통령령제30708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3
대통령령제3070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8
대통령령제3071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1

대통령령제30711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58	2020. 5. 26.	143
대통령령제3071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6
대통령령제3071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3
대통령령제30714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3
대통령령제30715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9
대통령령제30716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1
대통령령제30717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4
대통령령제30718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	"	166
대통령령제307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0
대통령령제3072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5
대통령령제3072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6

총리령

총리령제161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56	2020. 5. 22.	5
총리령제1616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61	2020. 5. 29.	5
총리령제1617호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7

부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30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53	2020. 5. 19.	120
환경부령제86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57	2020. 5. 25.	3
환경부령제864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58	2020. 5. 26.	178
환경부령제86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9
보건복지부령제72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2

고용노동부령제28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9758	2020. 5. 26.	193
국토교통부령제72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1
국토교통부령제72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2
국토교통부령제728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5
국방부령제1018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59	2020. 5. 27.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보건복지부령제726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51
환경부령제86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6
환경부령제8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9
환경부령제86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8
환경부령제870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6
국토교통부령제729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7
국토교통부령제730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9
국토교통부령제73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2
국토교통부령제732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4
국토교통부령제73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7
외교부령제78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19760	2020. 5. 28.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법무부령제97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61	2020. 5. 29.	32

인사

인사발령 법 제73호

2020. 5. 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복직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최정윤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5. 22.자) 끝.

인사발령 법 제75호

2020. 5. 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심재광	2020. 5. 11.부터 2020. 6. 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재경	2020. 5. 11.부터 2021. 2.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흥성지원 판사	권보원	2020. 5. 11.부터 2020. 7. 2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전선주	2020. 5. 11.부터 2020. 8. 1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79호 2020. 5. 15.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결임해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태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나.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정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20. 5.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83호 2020. 5. 2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상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0. 6. 19.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소병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6. 19.부터 2020. 8. 18.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6. 9.부터 2020. 8. 20.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노종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6. 19.부터 2020. 8. 18.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정현숙	2020. 6. 10.부터 2020. 8. 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지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6. 9.부터 2021. 1. 3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동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6. 9.부터 2020. 8. 8.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6. 9.부터 2020. 9. 3.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현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6. 19.부터 2021. 1. 31.까지 휴직을 명함
	”	최지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6. 15.부터 2020. 9. 11.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최민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6. 2.부터 2020. 7. 1.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가정법원 판사	이효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6. 19.부터 2020. 12. 18.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현경	2020. 6. 22.부터 2020. 1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3.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6. 28.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6. 28.부터 2020. 8. 28.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영주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6. 20.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6. 20.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홍은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6. 15.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황지영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6. 27.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정혜승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에 포함 (2020. 6. 26.자) 끝.

공지사항

◎ 5월 신착 법률도서·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5월분 법률도서·일반도서(546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96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2019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젠더법의 주요 쟁점/ 국제거래법의 주요 쟁점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20
2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2020
3	(법학초보자를 위한) 생활과 법률 / 김두진	동방문화사	2020
4	Ewha law review v.9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
5	Issue 관련 국민 의견조사: 2019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2019
6	高麗法學 v.96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7	법과 기업연구 v.10-1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8	法과 社會 v.63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20
9	法과 政策 v.26-1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濟州大學校	2020
10	法과 政策研究 v.20-1 /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20
11	法制研究 v.57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9
12	法曹 v.2020-2 / 법조협회	法曹協會	2020
13	法學 v.61-1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4	법학개론 / 김형만	弘文社	2020
15	법학개론 / 이재열	집현재	2020
16	법학개론: 기본3법을 중심으로 / 최정일	학림	2020
17	法學論叢 v.37-1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20
18	法學研究 v.23-1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9	法學研究 v.30-1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0	법학원론 / 황태운	박영사	2020
21	比較私法 v.88 / 한국비교사법학회	韓國比較私法學會	2020
22	成均館法學 v.32-1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法學研究院	2020
23	圓光法學 v.36-1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4	一鑑法學 v.45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5	저스티스 v.177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20
26	中央法學 v.22-1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20
27	統一과 法律 v.42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20
28	判例實務研究 v.13 / 비교법실무연구회	博英社	2020
29	判例研究 v.31 / 부산판례연구회	釜山判例研究會	2020
30	論究ジュリスト v.31 / 有斐閣	有斐閣	2019
31	論究ジュリスト v.32 / 有斐閣	有斐閣	2020
32	法と心理学への招待 / サトウタツヤ	有斐閣	2020
33	法思想史 / 中山竜一	有斐閣	2019
34	重要判例解説 v.2019 / 有斐閣	有斐閣	2020
35	現代法律実務の諸問題 / 日本弁護士連合会	第一法規	2019
36	(The) law quarterly review v.135-1 / Reynolds, F.M.B, Sweet & Maxwell	Sweet & Maxwell	2019
37	(The) law quarterly review v.136-2 / Reynolds, F.M.B, Sweet & Maxwell	Sweet & Maxwell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8	Grundriss der deutschen Rechtsgeschichte / Gmür, Rudolf	Franz Vahlen	2018
39	How Civil Law is Taught in Asian Universities / KEIGLAD	KEIGLAD	2019
40	Kritische Justiz: KJ v.53-1 / Buckel, Sonja	Nomos	2020
41	Michigan law review v.118-4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20
42	Prinzip und Prinzipienfrage in der Entwicklung des modernen Naturrechts / Scattola, Merio	Frommann-Holzboog	2018
43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v.136 / Kaiser, W, Schermaier, M, Thür, G, Köbler, G, Oestmann, P, Rückert, J, Becker, H.-J, Wall, H, De, Thier, A, Savigny-Stiftung	Böhlau Verlag	2019
44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v.39-2 / Machura, Stefan, Bora, Alfons, Cottier, Michelle, Guibentif, Pierre, Höland, Armin, Lucke, Doris, Ludwig-Mayerhofer, Wolfgang, Machurg, Stefan, Reubner, Gunther	Lucius & Lucius	2019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5	朝鮮社會法史攷 / 이종길	동아대학교 출판부	2020
46	現代ローマ法体系. 第一卷 / Savigny, Friedrich Carl von	成文堂	2001
47	現代ローマ法体系. 第四卷 / Savigny, Friedrich Carl von	成文堂	1993
48	現代ローマ法体系. 第八卷 / Savigny, Friedrich Carl von	成文堂	2009
49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96 de la collection: 2018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50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97 de la collection: 2018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9
51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98 de la collection: 2018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9
52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99 de la collection: 2018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9
53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400 de la collection: 2019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9
54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401 de la collection: 2019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9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55	(2020) 관세법 해설 / 이종익	세경사	2020
56	(2020년) 국가계약법령·예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포함 / 법령편찬위원회	건설연구사	2020
57	(季刊)著作權 v.129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58	(준)특허법 / 박형준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59	(테미스) 상표법 / 한경훈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0
60	(판례·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I / 이상국	대명출판사	2020
61	(판례·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II / 이상국	대명출판사	2020
62	(허찬녕 변호사의) 관세무역 판례 해설 / 허찬녕	지혜와지식	2020
63	IT와 法 研究 v.20 /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0
64	경제법 / 신현운	法文社	2020
65	공정거래절차의 법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를 중심으로 / 박준영	경인문화사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66	근로기준법 주해. I: 제1조~제14조 /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20
67	근로기준법 주해. II: 제15조~제42조 /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20
68	근로기준법 주해. III: 제43조~제106조 /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20
69	기업법 / 안강현	박영사	2020
70	노동법 / 임종률	박영사	2020
71	노동법실무연구 제2권 : 조희대 대법관 퇴임기념 / 노동법실무연구회	사법발전재단	
72	勞働法研究 v.48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0
73	勞働法學 v.73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勞働法學會	2020
74	노동정책연구 v.2020-1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20
75	다문화 가족이 꼭 알고 있어야 손해 보지 않는 노동법 / 법조연구회	비피기술거래	2020
76	단결권의 보호와 법적 쟁점 : 한-EU FTA 분쟁을 중심으로 /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2019
77	독일 초상권 이론과 사례 / 이수중	박영사	2020
78	독점규제법 / 신동권	박영사	2020
79	독점규제법 기본판례 / 권오승	法文社	2020
80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 박순태	현암사	2020
81	미국 특허소송의 이해 / 진육재	박영사	2019
82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2019
83	법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 Ashley, Kevin D	박영사	2020
84	부동산금융법: 이론과 실무 / 노상범	박영사	2020
85	부동산조세법 / 민태욱	부연사	2020
86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 정상조	박영사	2020
87	産業財産權 v.63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2020
88	산재보험법: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 I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20
89	산재보험법: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 II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90	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사례: 산업재해사고와 보상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0
91	세법강의 / 이창희	박영사	
92	세법개론: 2020. I / 임상엽	상경사	2020
93	세법개론: 2020. II / 임상엽	상경사	2020
94	稅法原論 / 오운	한국학술정보	2020
95	소비자보호법 / 신동권	박영사	2020
96	암 환우 및 암 치료병원 관련 최근 5년간의 판례 / 한국암재활협회	한국암재활협회	2018
97	여신실무법률: 담보. I / 오시정	한국금융연수원	2020
98	여신실무법률: 담보. II / 오시정	한국금융연수원	2020
99	영국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2019
100	온라인게임 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 이병준	세창	2020
101	일감 부동산법학 v.20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출판부	2020
102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분석: 이론, 역사, 제도 /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2019
103	장기 재정전망 현황 및 이슈 분석: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 홍수완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104	재정법의 체계 및 범위에 관한 연구 / 강주영	한국법제연구원	2019
105	조세법 / 임승순	박영사	2020
106	조세법전 / 삼일인포마인	삼일인포마인	2020
107	조세연구 v.20-1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20
108	租稅學術論集 v.36-1 / 한국국제재정협회	韓國國際租稅協會	2020
109	중소기업보호법 / 신동권	박영사	2020
110	증권법연구 v.21-1 / 한국증권법학회	三宇社	2020
111	지식재산권법 / 정상조	弘文社	2020
112	지식재산연구 v.15-1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13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v.12-1 / 한양대학교 지적재산 & 정보법센터	한양대학교	2020
114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 / 김성권	삼원사	2019
115	테마 상표법: 2020년 변리사 시험대비 / 최지환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0
116	環境法研究 v.42-1 / 한국환경법학회	韓國環境法學會	2020
117	환경판례백선 / 한국환경법학회	박영사	2019
118	(テーマ別)重要特許判例解説 / 創英IPラボ	日本評論社	2019
119	(事例演習)労働法 / 水町勇一郎	有斐閣	2019
120	(詳解)労働法 / 水町勇一郎	東京大学出版会	2019
121	(設例から考える)国際租税法 / 藤本哲也	中央経済社	2019
122	(実践・新しい)雇用社会と法 / 野川忍	有斐閣	2019
123	AI・IoT・ビッグデータの法務最前線 / 齋藤浩貴	中央経済社	2019
124	NPOと労働法: 新たな市民社会構築に向けたNPOと労働法の課題 / 渋谷典子	晃洋書房	2019
125	ドイツの学校法制と学校法学 / 結城忠	信山社	2019
126	規範の逆転: フランス労働法改革と日本 / 野田進	日本評論社	2019
127	農林水産関係知財の法律相談. I / 日弁連知的財産センター	青林書院	2019
128	農林水産関係知財の法律相談. II / 日弁連知的財産センター	青林書院	2019
129	働き方改革関連法: 法律・政令・省令・告示・公示 / 信山社	信山社	2019
130	労働基準法がよくわかる本 / 下山智恵子	成美堂出版	2019
131	労働法の再構築: 働き方改革の時代を迎えて /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9
132	労働法実務労働者側の実践知 / 君和田伸仁	有斐閣	2019
133	労働法実務使用者側の実践知 / 岡芹健夫	有斐閣	2019
134	非正規雇用の法政策: 社会保険法制度による可能性 / 楠本敏之	信山社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35	日本教育法學會年報 v.49 / 日本教育法學會	有斐閣	2020
136	租稅研究 v.2020-4 / 日本租稅研究協	日本租稅研究協會	2020
137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Ipsen, Jörn	Franz Vahlen	2019
138	Beck'scher Vergaberechtskommentar, Band 2: VgV, SektVO, KonzVgV, VOB ; A-EU, VS-VgV, VS-VOB; A-VS / Burgi, Martin	C.H. Beck	2019
139	BGB Staatshaftung: §§ 839, 839a / Spickhoff, Andreas	C.H. Beck	2019
140	Datenschutz-Grundverordnung: Bundesdatenschutzgesetz / Kühling, Jürgen	C.H. Beck	2018
141	Entscheidungen des Bundesarbeitsgerichts v.160 / Germany Bundesarbeitsgericht	Recht und Wirtschaft	2018
142	Entscheidungen des Bundesarbeitsgerichts v.161 / Germany Bundesarbeitsgericht	Recht und Wirtschaft	2018
143	Entscheidungen des Bundesarbeitsgerichts v.162 / Germany Bundesarbeitsgericht	Recht und Wirtschaft	2019
144	Entscheidungen des Bundesarbeitsgerichts v.163 / Germany Bundesarbeitsgericht	Recht und Wirtschaft	2019
145	Entscheidungen des Bundesarbeitsgerichts v.164 / Germany Bundesarbeitsgericht	Recht und Wirtschaft	2019
146	Entscheidungen des Bundesarbeitsgerichts v.165 / Germany Bundesarbeitsgericht	Recht und Wirtschaft	2019
147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01-110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3
148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10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3
149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11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3
150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12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51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13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4
152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14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4
153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15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5
154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16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5
155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17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6
156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18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6
157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19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6
158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20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7
159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21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7
160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22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8
161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23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8
162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24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9
163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25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9
164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 (BSGE) v.126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9
165	Handbuch Umweltrecht / Koch, Hans-Joachim	C.H. Beck	2018
166	Medical Law Review v.27-4 / Brazier, Margot, Oxford University Centre of Medical Law and Ethics, King' s Colle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67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63 /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9
168	Staatsrecht: systematische Erläuterung des Grundgesetze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Badura, Peter	C.H. Beck	2018
169	Steuerliche Gewinnermittlung bei Rechnungslegung in Fremdwährung: Eine Analyse von ausgewählten steuerrechtlichen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Buchführung und Rechnungslegung in Fremdwährung / Rothenbühler, Marco	Helbing & Lichtenhahn	2019
170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 Eyermann, Erich	C.H. Beck	2019
171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 Kopp, Ferdinand O	C.H. Beck	2018
172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v.136 / Kaiser, W, Schermaier, M, Thür, G, Köbler, G, Oestmann, P, Rückert, J, Becker, H.-J, Wall, H, De, Thier, A, Savigny-Stiftung	Böhlau Verlag	2019
173	Zugang zum Recht: Vom Grundrecht auf einen wirksamen Rechtsschutz / Kaufmann, Claudia	Helbing & Lichtenhahn	2017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74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호 국제사건 백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75	(에센스) 국제조약집 / 정인섭	박영사	2020
176	(완역) 유럽연합창설조약 / 이호선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9
177	국제법 동향과 실무 v.56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20
178	국제법으로 세상 읽기 / 대한국제법학회	박영사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79	國際法學會論叢 v.65-1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20
180	글로벌 규제협력을 위한 상호승인 법제 연구 /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2019
181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 이해영	사법정책연구원	2020
182	외국사법제도연구. 26: 각국의 법관 업무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
183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2020
184	중재연구 v.30-1 /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	2020
185	항공법판례해설. III: 항공운송법 / 권창영	法文社	2020
186	(Q&A)國際相続の実務と国外転出時課税 / タクトコンサルティング	日本法令	2019
187	(必ず取れる日本人の配偶者ビザ!) 國際結婚手續ガイド: 国別の國際結婚・入管手續 / 小島健太郎	セルバ出版	2019
188	フランス人とは何か: 国籍をめぐる包摂と排除のポリティクス / Weil, Patrick	明石書店	2019
189	世界法年報 v.39 / 世界法學會	世界法學會	2020
190	日本の海洋政策と海洋法 / 坂元茂樹	信山社	2019
191	徴用工裁判と日韓請求権協定: 韓国大法院判決を読み解く / 山本晴太	現代人文社	2019
192	Atomrecht: Atomgesetz und Ausstiegsgesetze / German	Nomos	2019
193	Ausländerrecht: Aufenthaltsgesetz, Freizügigkeitsgesetz/EU und ARB 1/80 (Auszug), Grundrechtecharta und Artikel 16a GG, Asylgesetz: Kommentar / Renner, Günter	C.H. Beck	2018
194	Baugesetzbuch: Kommentar / Schrödter, Wolfgang	Nomos	2019
195	Energiewirtschaftsgesetz / German	Nomos	2019
196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Kommentar / Meincke, Jens Peter	C.H. Beck	2018
197	European law review v.2020-1 / Arnall, Anthony, White, Robin C.A	Sweet & Maxwell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98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kommentar / Büscher, Wolfgang	Carl Heymanns	2019
199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Preisangabenverordnung, Unterlassungsklagengesetz, Dienstleistungs- Informationspflichten- Verordnung / Köhler, Helmut	C.H. Beck	2019
200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esonderer Teil / Girsberger, Daniel	Helbing & Lichtenhahn	2018
201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v.84-1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Mohr	2020
20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19-4 / Lagarde, Paul, Dalloz	Dalloz	2019
203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9-4 / Desurmont, Thierry, Gsubisc, Yves, Kerever, Andre, Henry Lemoine	Henry Lemoine	2019
204	Steuerrecht / Birk, Dieter	C.F. Müller	2019
205	Stra ß enverkehrsrecht / Jagusch, Heinrich	C.H. Beck	2019
206	Umsatzsteuergesetz / Bunjes, Johann	C.H. Beck	2019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07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계적 방법론. II : 데이터 정보보호를 위한 최신 기법의 활용 /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0
208	公法研究 v.48-3 /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20
209	세상을 바꾼 성평등 판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푸른사상	2020
210	연간보고서 v.2019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211	자유의 법 / Dworkin, Ronald	미지북스	2019
212	젠더 관례 다시읽기: 2017-2019 / 젠더법연구회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13	한국헌법론 / 전광석	집현재	2020
214	한국헌법론 / 허영	박영사	2020
215	헌법소송법론 / 허영	박영사	2020
216	헌법학 / 한수웅	法文社	2020
217	헌법학 / 성낙인	法文社	2020
218	헌법학강론 / 김승대	法文社	2020
219	헌법학개론 / 정만희	피앤씨미디어	2020
220	憲法學研究 v.26-1 /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20
221	헌법학원론 / 김학성	피앤씨미디어	2020
222	헌법학원론 / 정연주	법영사	2020
223	(リアルタイム)法学・憲法 / 三浦一郎	北樹出版	2019
224	(注釈)日本国憲法, 3: 国民の権利及び義務(2)・国会, § § 25-64 / 長谷部恭男	有斐閣	2020
225	アメリカ人のみた日本の死刑 / Johnson, David T	岩波書店	2019
226	マイナンバー法と情報セキュリティ / 宇賀克也	有斐閣	2020
227	医療と宗教と法: 医療倫理と宗教の交錯 / 平野武	晃洋書房	2019
228	憲法義解 / 伊藤博文	岩波書店	2019
229	憲法判例と裁判官の視線: その先に見ていた世界 / 千葉勝美	有斐閣	2019
230	Arbeitsrecht: Lernbuch nach Anspruchsgrundlagen / Reichold, Hermann	C.H. Beck	2019
231	Deutsches Staatsrecht / Maunz, Theodor	C.H. Beck	2018
232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49 / Germany Bundesverfassungsgericht	J.C.B.Mohr	2019
233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50 / Germany Bundesverfassungsgericht	J.C.B.Mohr	2019
234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Register v.15 / Germany Bundesverfassungsgericht	Mohr Siebeck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35	Erfurter Kommentar zum Arbeitsrecht / Dieterich, Thomas	C.H. Beck	2019
236	Erkenntnisse und Beschlüsse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v.81-2 / Österreichische Verfassungsgerichtshofes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Staatsdruckerei	2018
237	Erkenntnisse und Beschlüsse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v.82-1 / Österreichische Verfassungsgerichtshofes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Staatsdruckerei	2018
238	Erkenntnisse und Beschlüsse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v.82-2 / Österreichische Verfassungsgerichtshofes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Staatsdruckerei	2019
239	Erkenntnisse und Beschlüsse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v.83-1 / Österreichische Verfassungsgerichtshofes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Staatsdruckerei	2019
240	Erkenntnisse und Beschlüsse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v.83-2 / Österreichische Verfassungsgerichtshofes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Staatsdruckerei	2020
241	Kollektives Arbeitsrecht / Richardi, Reinhard	Franz Vahlen	2019
24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KritV) v.102-3 /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9
243	Mün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Band 1: Individualarbeitsrecht I : §§ 1-100 / Richardi, Reinhard	C.H. Beck	2018
244	Mün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Band 2: Individualarbeitsrecht II : §§ 101-214 / Richardi, Reinhard	C.H. Beck	2018
245	Public law v.2019-1 / Sweet & Maxwell Sweet and Maxwell	Sweet & Maxwell	2019
246	Public law v.2020-1 / Sweet & Maxwell Sweet and Maxwell	Sweet & Maxwell	2020
247	Public law v.2020-2 / Sweet & Maxwell Sweet and Maxwell	Sweet & Maxwell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48	SGB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Becker, Ulrich	C.H. Beck	2018
249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2020-1 / C.F.Müller	C.F.Müller	2020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50	(2020) 공무원연금 실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2020
251	(신) 행정법입문 / 홍정선	박영사	2020
252	(新)행정법특강. [1] / 홍정선	박영사	2020
253	(新)행정법특강. [2] / 홍정선	박영사	2020
254	(신경향) 행정법총론 / 박재현	大明出版社	2020
255	경찰학연구 v.61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20
256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태와 주요 문제점: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중심으로 / 조형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257	기본 행정법 / 홍정선	박영사	2020
258	地方自治法研究 v.65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20
259	韓國行政法論 / 정남철	法文社	2020
260	행정법 / 정형근	피앤씨미디어	2020
261	행정법 / 김민호	박영사	2020
262	행정법 / 하명호	박영사	2020
263	행정법 강론: Administrative law / 김남철	박영사	2020
264	행정법 도그마틱 / Schmidt-Aßmann, Eberhard	法文社	2020
265	행정법강의 / 박균성	박영사	2020
266	행정법개론 / 정하중	法文社	2020
267	행정법원론. 상 / 홍정선	박영사	2020
268	행정법원론. 하 / 홍정선	박영사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69	행정법의 개혁 / 선정원	경인문화사	2020
270	行政法理論과 判例評釋 / 김용섭	박영사	2020
271	현대 행정법강의 / 김유환	法文社	2020
272	(判例から考える)行政救済法 / 岡田正則	日本評論社	2019
273	情報公開・オープンデータ・公文書管理 / 宇賀克也	有斐閣	2019
274	行政法研究 v.31 /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9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75	독일 집회법 모범초안 / Arbeitskreis Versammlungsrecht	세창	2020
276	명예훼손소송과 오신의 상당성 / 배병일	영남대학교출판부	2020
277	특별형법 / 이주원	弘文社	2020
278	被害者學研究 v.28-1 / 한국피해자학회	韓國被害者學會	2020
279	형법각론 / 배중대	홍문사	2020
280	형법개론 / 한상훈	정독	2020
281	형법총론 / 배중대	홍문사	2020
282	형법총론 / 김성천	소진	2020
283	형법총론 / 김혜정	정독	2020
284	刑事法研究 v.82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20
285	형사특별법 / 박상기	집현재	2020
286	家族をめぐる法・心理・福祉：法と臨床が交錯する現場の實踐ガイド / 村尾泰弘	法律文化社	2019
287	未来世代の環境刑法. 1: Textbook 基礎編 / 長井圓	信山社	2019
288	未来世代の環境刑法. 2: Principles 原理編 / 長井圓	信山社	2019
289	少年犯罪はどのように裁かれるのか° : 成人犯罪への道をたどらせないために / 須藤明	合同出版	2019
290	刑法総論の悩みどころ / 橋爪隆	有斐閣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91	(Die) Strafproze ß ordnung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Werner Rosenberg / Rosenberg, Werner	De Gruyter	2019
292	(Die) Strafproze ß ordnung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Gro ß kommentar. 4 Band: Teilband 1. : ff 112b-136a / Rosenberg, Löwe	De Gruyter Recht	2019
293	(Die) Strafproze ß ordnung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Gro ß kommentar. Band 6: § § 212-255a / Rosenberg, Werner	De Gruyter	2019
294	Betäubungsmittelgesetz (BetmG): Kommentar zum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vom 3. Oktober 1951 / HugBeeli, Gustav	Helbing & Lichtenhahn	2016
295	Cybercrime und Strafrecht in de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 / Kochheim, Dieter	C.H. Beck	2018
296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63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9
297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mit GVG, EGGVG und EMRK / Pfeiffer, Gerd	C.H. Beck	2019
298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and 7: Nebenstrafrecht II / Joecks, Wolfgang	C.H. Beck	2019
299	Ordnungswidrigkeitengesetz / Bohnert, Joachim	C.H. Beck	2018
300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StGB): mit V-StGB-MStG und JStG: kommentar / Donatsch, Andreas	Orell Füssli	2018
301	Strafgesetzbuch: Kommentar / Dreher, Eduard	C.H. Beck	2018
302	Strafgesetzbuch: Kommentar / Heintschel-Heinegg, Bernd von	C.H. Beck	2018
303	Strafgesetzbuch: Kommentar / Satzger, Helmut	Carl Heymanns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04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Großkommentar. 12 Band: §§ 323a - 330d / Ebermayer, Ludwig Popp, Andreas Möhrenschrager, Manfred	De Gruyter	2020
305	Strafprozessrecht / Beulke, Werner	C.F. Müller	2018
306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31-4 /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9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07	(등기실무를 위한) 상업등기신청실무 / 신천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9
308	(新) 민법강의 / 송덕수	박영사	2020
309	방문판매법 / 남광	홍문사	2020
310	보험법 / 한창희	국민대학교 출판부	2020
311	보험법 / 장덕조	法文社	2020
312	상법: 총칙·상행위·회사 / 이기중	三英社	2020
313	상법강의 / 김흥기	박영사	2020
314	商法講義 / 송옥렬	弘文社	2020
315	상법개론 / 정찬형	법영사	2020
316	상법총칙·상행위법 / 김정호	法文社	2020
317	商事判例研究 v.33-1 /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20
318	신체계 회사법: Cases and materials on corporations / 노혁준	박영사	2020
319	전자상거래법 / 손진화	신조사	2020
320	海事法研究 v.32-1 / 한국해사법학회	韓國海事法學會	2020
321	회사법 / 장덕조	法文社	2020
322	회사법 / 김건식	박영사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23	회사법 / 이중훈	박영사	2020
324	會社法講義 / 이철송	博英社	2020
325	商法總則·商行為法 / 大塚英明	有斐閣	2019
326	会社法判例40! / 久保田安彦	有斐閣	2019
327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I-22-3: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 675c-676c (Zahlungsdienstrecht) / Staudinger, Julius von Omlor, Sebastian Rieble, Volker	De Gruyter	2020
32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II-5: Sachenrecht, § § 985-1011, (Eigentumsschutz und Eigentümer-Besitzer-Verhältnis) / Staudinger, Julius von Thole, Christoph Kaiser, Dagmar	De Gruyter	2019
329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II-7: Sachenrecht, § § 1113-1203, (Hypothek, Grundschuld, Rentenschuld) / Staudinger, Julius von Wolfsteiner, Hans Wiegand, Daniel	De Gruyter	2019
330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VII-1: Allgemeiner Teil, Art 3, 3a, 4 EGBGB; Anhang zu Art 4 EGBGB : (IPR - Anwendungsbereich, Renvoi und Länderberichte) / Staudinger, Julius von Hausmann, Rainer Henrich, Dieter	De Gruyter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31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5: Allgemeiner Teil, §§ 164-240, (Stellvertretung, Zustimmung, Fristen, Verjährung, Selbsthilfe, Sicherheitsleistung) / Staudinger, Julius von Schilken, Eberhard Klumpp, Steffen Repgen, Tilman Peters, Frank Jacoby, Florian	De Gruyter	2019
332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I-20-1: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631-650v : (Werkvertrag, Bauvertrag, Verbraucherbaupvertrag, Architekten- und Ingenieurvertrag, Bauträgervertrag) / Staudinger, Julius von Peters, Frank Kaiser, Dagmar	De Gruyter	2019
333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I-4: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255-304, (Leistungsstörungenrecht 1) / Staudinger, Julius von Bittner, Claudia Caspers, Georg Feldmann, Cornelia Kolbe, Sebastian Schwarze, Roland	De Gruyter	2019
334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II-2-1: Sachenrecht, §§ 883-888 : (Vormerkung) / Staudinger, Julius von	De Gruyter	2020
335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V-13: Familienrecht, §§ 1773-1895 : (Vormundschaftsrecht) / Staudinger, Julius von Veit, Barbara Bienewald, Werner Coester, Michael	De Gruyter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36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V-2-2: Erbrecht, §§ 2064-2196 (Testament, Erbeinsetzung, Vermächtnis, Auflage) / Staudinger, Julius von Avenarius, Martin Otte, Gerhard Baldus, Christian	De Gruyter	2019
337	Aktiengesetz / Hüffer, Uwe	C.H. Beck	2018
338	Allgemeines Schuldrecht / Brox, Hans	C.H. Beck	2019
339	Bankrecht: Konto, Zahlungsverkehr, Darlehensvertrag, Kreditsicherheiten, Wertpapierberatung / Krepold, Hans-Michael	Franz Vahlen	2018
340	Besonderes Schuldrecht / Brox, Hans	C.H. Beck	2019
341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Nebengesetzen / Palandt, Otto	C.H. Beck	2019
342	Erbrecht / Brox, Hans	Franz Vahlen	2018
343	Erbrecht: BGB, FamFG, ZPO, BeurkG, GBO, EGBGB, EStG, ErbStG, EuErbVO / Burandt, Wolfgang	C.H. Beck	2019
344	Familienrecht: ein Studienbuch / Dethloff, Nina	C.H. Beck	2018
345	FinTech-Handbuch: Digitalisierung, Recht, Finanzen / Möslein, Florian	C.H. Beck	2019
346	Gesellschaftsrecht / Koch, Jens	C.H. Beck	2019
347	Gesellschaftsrecht: BGB, HGB, PartGG, GmbHG, AktG, GenG, UmwG, InsO, AnfG, IntGesR / Henssler, Martin	C.H. Beck	2018
348	Handelsgesetzbuch: Kommentar / Koller, Ingo	C.H. Beck	2019
349	Handelsrecht: mit Gesellschaftsrecht / Wörten, Rainer	Franz Vahlen	2018
350	Insolvenzordnung (InsO): Kommentar, Bd. 1: §§ 1 - 147 / Smid, Stefan	Kohlhammer	2018
351	Insolvenzordnung (InsO): Kommentar, Bd. 2: §§ 148 - 359 / Smid, Stefan	Kohlhammer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52	Kommentar zum Aktiengesetz Bd. 2: § § 150-410 : SpruchG. SE-VO / Stilz, Eberhard	C.H.Beck	2019
353	Kommentar zum Aktiengesetz. Bd.1: ff 1-149 / Spindler, Gerald	C.H. Beck	2019
354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1: § § 1-480 / Bamberger, Heinz Georg	C.H. Beck	2019
355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2: § § 481-704 : AGG / Bamberger, Heinz Georg	C.H. Beck	2019
356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3: § § 705-1017 : PartGG, ProdHaftG, ErbbauRG, WEG / Bamberger, Heinz Georg	C.H. Beck	2019
357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4: § § 1018-1921 : GewSchG, LPartG, VersAusglG / Bamberger, Heinz Georg	C.H. Beck	2019
358	Münchener Kommentar zum FamFG: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FamFG) mit internationalem und europäischem Zivilverfahrensrecht in Familiensachen (IZVR, EuZVR). Band 1: § § 1-270 / Rauscher, Thomas	C.H. Beck	2018
359	Münchener Kommentar zum FamFG: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FamFG) mit internationalem und europäischem Zivilverfahrensrecht in Familiensachen (IZVR, EuZVR). Band 2: § § 271-493 / Rauscher, Thomas	C.H. Beck	2019
360	Münchener Kommentar zum Handelsgesetzbuch. Band 5: § § 343-406 / Grunewald, Barbara Benicke, Christoph Ferrari, Franco Häuser, Franz Langenbucher, Katja Mankowski, Peter Schmidt, Karsten	C.H. Beck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61	Münchener Kommentar zum Handelsgesetzbuch, Band 6: Bankvertragsrecht : Recht des Zahlungsverkehrs, Kapitalmarkt- und Wertpapiergeschäft, Ottawa Übereinkommen über Internationales Factoring / Herresthal, Carsten Brink, Ulrich Einsele, Dorothee Ekkenga, Jens Ferrari, Franco Fest, Timo	C.H. Beck	2019
362	Münchener Kommentar zum Handelsgesetzbuch, Band 6: Bankvertragsrecht : Recht des Zahlungsverkehrs, Kapitalmarkt- und Wertpapiergeschäft, Ottawa Übereinkommen über Internationales Factoring / Herresthal, Carsten Brink, Ulrich Einsele, Dorothee Ekkenga, Jens Ferrari, Franco Fest, Timo	C.H. Beck	2019
363	Münchener Kommentar zum Handelsgesetzbuch, Band 7: Transportrecht / Herber, Rolf Schmidt, Karsten Schmidt, Christine Basedow, Jürgen Andresen, Bernd	C.H. Beck	2019
364	Obligationenrecht: Allgemeiner Teil: Grundkurs / Kramer, Ernst A	Helbing & Lichtenhahn	2018
365	OR kompakt: Grundlagen, Vertragsrecht (inkl. Arbeitsrecht), Haftpflichtrecht: eine Einführung mit praktischen Beispielen und Übersichten für Studierende an Fachhochschulen und Universitäten / Dieth, Eric	Helbing & Lichtenhahn	2019
366	Pflichtteilsprozess: beraten, gestalten, durchsetzen / Krug, Walter	Nomos	2018
367	Raumordnungsgesetz: Kommentar / Spannowsky, Willy	C.H. Beck	2018
368	Raumordnungsgesetz: mit Landesplanungsrecht / Germany	Nomos	2019
369	Sachenrecht / Wilhelm, Jan	De Gruyter	2019
370	Sachenrecht / Vieweg, Klaus	Franz Vahlen	2018
371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1/1: Privatrecht im 19. Jahrhundert / Caroni, Pio Hofer, Sibylle	Helbing & Lichtenhahn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72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11/2: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esonderer Teil / Girsberger, Daniel	Helbing & Lichtenhahn	2018
373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4/1: Erbrecht / Wolf, Stephan Genna, Gian Sandro	Helbing & Lichtenhahn	2012
374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5-1: Eigentum und Besitz / Sutter-Somm, Thomas	Helbing & Lichtenhahn	2014
375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7/4: Der Arbeitsvertrag / Vischer, Frank Wiegand, Wolfgang Müller, Roland M	Helbing & Lichtenhahn	2014
376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8/10: Handelsrecht / Sanwald, Reto	Helbing & Lichtenhahn	2014
377	Testamentsauslegung: Strategien bei unklaren letztwilligen Verfügungen / Horn, Claus-Henrik	C.H. Beck	2019
378	Traité de Droit Privé Suisse, Bd 5/2: Les droits réels limités en général, les servitudes et les charges foncières / Piotet, Denis	Helbing & Lichtenhahn	2012
379	Urheberrecht: ein Studienbuch / Rehbinder, Manfred	C.H. Beck	2018
380	Urheberrechtsgesetz: 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Kunsturhebergesetz: Kommentar / Dreier, Thomas	C.H. Beck	2018
381	Wettbewerbsrecht,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Vorschriftensammlung / Eckardt, Bernd Klett, Dieter Schwartmann, Rolf Jung, Ingo	C.F. Müller	2019
382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84-1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20
383	ZGB kompakt: Eine Einführung mit praktischen Beispielen und Übersichten: Für Studierende an Fachhochschulen und Universitäten / Dieth, Eric	Helbing & Lichtenhahn	2018
384	Zivilgesetzbuch, Teil II: Art. 457-977 ZGB und Art. 1-61 SchIT ZGB / Honsell, Heinrich	Helbing & Lichtenhahn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85	Zivilgesetzbuch, Teil: I: Art. 1-456 ZGB / Honsell, Heinrich	Helbing & Lichtenhahn	2018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86	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 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2020
387	민사실무관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2020
388	민사참여관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2020
389	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 이종엽	사법정책연구원	2020
390	사법연수원 연간보고서 v.2019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20
391	特別法研究 v.17 /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20
392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2020
393	民事保全 / 須藤典明	靑林書院	2019
394	弁護士法概説 / 高中正彦	三省堂	2020
395	性法・大学・民法学：ポスト司法制度改革の民法学 / 大村敦志	有斐閣	2019
396	行政書士法コンメンタール / 兼子仁	北樹出版	2019
397	(Die) neue Musterfeststellungsklage: Einführung / Weinland, Alexander	C.H. Beck	2019
398	Challenges for Studying Law Abroad in the Asian Region / KEIGLAD	KEIGLAD	2018
399	Comparative Legal Education from Asian Perspective / KEIGLAD	KEIGLAD	2017
400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Bd. 9: §§ 916-945b; 960-1024, EGZPO, GVG / Stein, Friedrich	Mohr Siebeck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01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mit Gerichtsverfassungsgesetz / Musielak, Hans-Joachim	Franz Vahlen	2019
402	Measuring Judicial Independence: The Political Economy of Judging in Japan / Ramseyer, J. Mar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403	Rechtsmissbrauch im Zivilprozess / Leidner, Tobias	Duncker & Humblot	2019
404	Richterauswahl und Richterausbildung im Systemvergleich: Österreich, Deutschland und die Schweiz seit 1945 / Grünstäudl, Georg	Stämpfli	2018
405	Zivilprozessordnung: FamFG ; Verfahren in Familiensachen ; GVG, Einführungsgesetze, EU-Zivilverfahrensrecht: Kommentar / Thomas, Heinz	C.H. Beck	2019
406	Zwangsversteigerungsgesetz: Kommentar zum ZV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it einem Anhang einschlägiger Texte und Tabellen / Zeller, Friedrich	C.H. Beck	2019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07	(강의) 민사소송법 / 전병서	박영사	2020
408	(법률실무를 위한) 가사소송실무 / 백성기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9
409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사건본인의 의견청취 방안 / 한국아동청소년심리지원협회	법원행정처	2020
410	가사조정 이론과 실제: 2020 /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2020
411	민사소송법 / 이현묵	弘文社	2020
412	민사소송법 / 김홍엽	박영사	2020
413	민사소송법 강의 / 전원열	박영사	2020
414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2 / 문영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415	민사집행법 / 전병서	박영사	2020
416	新民事執行法: 附: 공매 / 이시운	博英社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17	우리나라 ADR법, 이렇게 제정하자: 분쟁해결, 갈등관리, 이웃분쟁조정? / 박철규	법북	2019
418	채무자회생법 / 전대규	법문사	2020
419	回生法學 v.19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9
420	(裁判官に聴く)民事裁判の実際と要点 / 門口正人	有斐閣	2019
421	(条解)民事執行法 / 伊藤眞	弘文堂	2019
422	(借金完全整理)自己破産マニュアル / 生活と法律研究所	自由国民社	2019
423	ドイツ民事訴訟法典: 2011年12月22日現在 / 日本, 法務省	法曹会	2012
424	簡裁民事ハンドブック. 3: 少額訴訟債権執行編 / 近藤基	民事法研究会	2019
425	商業登記の手續 / 東京法務局商業登記研究會	日本法令	2019
426	Kollektiver Rechtsschutz: ein Memorandum der Praxis / Weimann, Martin	De Gruyter	2018
427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Bd. 1: Einleitung ff 1-77 / Stein, Friedrich	Mohr Siebeck	2014
428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Bd. 2: ff 78-147 / Stein, Friedrich	Mohr Siebeck	2016
429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Bd. 3: ff 148-270 / Stein, Friedrich	Mohr Siebeck	2016
430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Bd. 4: ff 271-327 / Stein, Friedrich	Mohr Siebeck	2018
431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Bd. 5: ff 328-510c / Stein, Friedrich	Mohr Siebeck	2015
432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Bd. 6: ff 511-703d / Stein, Friedrich	Mohr Siebeck	2018
433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Bd. 8: ff 802a-915h / Stein, Friedrich	Mohr Siebeck	2017
434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Bd. 10: ff 1025-1066 / Stein, Friedrich	Mohr Siebeck	201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35	Schweizerisches Zivilprozessrecht: mit Grundzügen des internationalen Zivilprozessrechts / Baumgartner, Samuel	Stämpfli	2018
436	Zivilprozessrecht / Rosenberg, Leo	C.H.Beck	2018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37	(2019) 고등군사법원연감: [2019.1.~2019.12.] / 한국. 고등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2020
438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 이은모	박영사	2020
439	형사소송법 / 이주원	박영사	2020
440	(基礎から学ぶ)デジタル・フォレンジック:入門から実務での対応まで / 安富潔	日科技連出版社	2019
441	刑事弁護人 / 亀石倫子	講談社	2019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42	(국제상업회의소) 청구보증통일규칙 가이드 / Goode, Roy	두남	2008
443	(사례·서식)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실무 / 정익군	법률정보센터	2020
444	가맹사업법의 이해: 고시·지침·심결례·사례 및 판례, 조정사례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0
445	家族法研究 v.34-1 / 한국가족법학회	韓國家族法學會	2020
446	家族法研究, V / 김상용	法文社	2019
447	계약법 / 양창수	博英社	2020
448	계약법: 민법판례교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우사	2020
449	계약예규 전문: 2019.12.18. 시행·일부개정 / 한국. 기획재정부	진한엠앤비	2020
450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 오시정	한국금융연수원	2019
451	금전거래와 법 / 정성현	박영사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52	물권법: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法文社	2020
453	미국 계약법 / 조국현	진원사	2019
454	民法講義 / 지원림	弘文社	2020
455	민법강의, 채권법(총론·강론) / 임윤수	형설출판사	2020
456	민법연구, 제2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오수원	박영사	2020
457	민법총칙 / 송덕수	박영사	2020
458	민법총칙 / 이재열	집현재	2020
459	민법총칙: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法文社	2020
460	부동산거래와 법 / 정성현	박영사	2019
461	불법행위법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우사	2020
462	상속법판례연구 / 김상훈	세창	2020
463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2018/2019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0
464	채권법: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法文社	2020
465	채권법총론 / 송덕수	박영사	2020
466	청구보증통일규칙 실무가이드 / 지정준	한국금융연수원 도서출판부	2012
467	탐정과 부동산 거래 / 강동욱	박영사	2020
468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자료집 v.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469	(論点體系)判例民法, 11: 相續 / 能見善久	第一法規	2019
470	(弁護士のための)遺産相続実務のポイント: 遺産分割・遺言無効・使途不明金ほか遺産分割の付随問題 / 森公任	日本加除出版	2019
471	(事例でわかる基礎からはじめる)旧民法相続に関する法律と実務: 民法・戸籍の変遷 家督相続・遺産相続 戸主 婿・養子 継子・嫡母庶子 入夫 相続人の特定 所有者不明土地 / 末光祐一	日本加除出版	2019
472	(相続法改正)新しい相続実務の徹底解説: 概説と事例QA / 吉田修平	青林書院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73	(新しい)家族信託: 遺言相続 後見に代替する信託の実際の活用法と文例 / 遠藤英嗣	日本加除出版	2019
474	(新注釋)民法. 7: 物權(4): § § 373~398의22 / 森田修	有斐閣	2019
475	(新注釋)民法. 19: 相續(1): § § 882~959 / 潮見佳男	有斐閣	2019
476	(実践!!)不動産売買・賃貸借契約書審査の実務 / 出澤総合法律事務所	学陽書房	2019
477	家族法 / 柳勝司	嵯峨野書院	2019
478	家族法: 民法を学ぶ / 窪田充見	有斐閣	2019
479	家族法改正を読む: 親族・相続法改正のポイントとトレンド / 松尾弘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19
480	契約法の現代化. II: 民法の現代化 / 山本敬三	商事法務	2018
481	権利擁護と成年後見実践: 社会福祉士のための成年後見入門 / 日本社会福祉士会	民事法研究会	2019
482	離婚・親子・相続事件判例解説: 実務精選120 / 加藤新太郎	第一法規	2019
483	民法(相続関係)改正法の概要 / 潮見佳男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9
484	民法: 親族・相続 / 松川正毅	有斐閣	2019
485	民事・税務上の「時効」解釈と実務: 税目別課税判断から相続・事業承継対策まで / 永吉啓一郎	清文社	2019
486	不動産業・建設業のための改正民法による実務対応: 不動産売買・不動産賃貸借・工事請負・設計監理委任 / 井上治	清文社	2019
487	事業再生と債権管理 v.168 / 金融財政事情研究会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20
488	死後事務委任契約の実務= 士業のための「おひとりさま終活業務」の手引き / 吉村信一	税務経理協会	2019
489	信託法理の展開と法主体: 会社法・民事訴訟法・倒産法との交錯 / 岡伸浩	有斐閣	2019
490	信託崩壊: 裏切られた信託 / King, Samuel P	日本評論社	2019
491	日本の家族と戸籍: なぜ「夫婦と未婚の子」単位なのか / 下夷美幸	東京大学出版会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92	賃貸アパート・マンションの民事信託実務: 準備・調査・契約書・登記・管理・運用・会計・税務 / 成田一正	日本法令	2019
493	債権法改正と実務上の課題 / 道垣内弘人	有斐閣	2019
494	特別受益・寄与分と遺言の実務対応: 実は知らない本当の相続分と遺留分 / 松井淑子	清文社	2019
495	(Das) Familienrecht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Eheschliessung, Scheidung, allgemeine Wirkungen der Ehe, Güterrecht, Kindesrecht, Erwachsenenschutzrecht, eingetragene Partnerschaft, Konkubinat / Hausheer, Heinz	Stämpfli	2018
496	(Das) Spannungsfeld zwischen dem Pflichtteilsrecht und dem Generationenwechsel in Familienunternehmen: Betrachtungen de lege lata und de lege ferenda / Kipfer-Berger, Jonas	Helbing & Lichtenhahn	2018
497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v.2020-1 /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Mohr Siebeck	2020
498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219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9
499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220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20
500	Grundriss des schweizerischen Erbrechts / Wolf, Stephan	Stämpfli	2017
501	Vergaberecht: GWB, VgV, VSVgV, SektVO, VOB/A, KonzVgV, UVgO, Haushaltsrecht, öffentliches Preisrecht: Handkommentar / German	Nomos	2019
502	Zur Auslegung des Stifterwillens / Von Orelli, Lukas	Helbing & Lichtenhahn	2019

[판례총서]

503	最高裁判所判例集索引 v.72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9
-----	-----------------------------	-------	------

■ 일반도서**[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17: 속기록 의무생산회의에 대해 묻고 답하다 /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0
2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18: 기록관리 현장 지원을 위한 기관방문 컨설팅의 추진 /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0
3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19: 디지털화 기록의 문자인식-OCR 적용 사례 및 테스트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0
4	情報管理學會誌 v.36-4 /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20
5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v.51-1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20
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31-1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20

[철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7	Roboter in der Gesellschaft: Technische Möglichkeiten und menschliche Verantwortung / Woopen, Christiane	Springer	2019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8	R&D 및 기술혁신 지원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 /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2019
9	감정평가학 논집 v.19-1 /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20
10	고용관계다변화와 노동자의 이해대변 / 정홍준	한국노동연구원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1	國防研究 v.63-1 / 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0
12	근로시간 관련 통계 및 근로시간 단축제 효과에 관한 분석 /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2019
13	기업성과, 생산성, 인구변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2019
14	낙수효과의 측정과 시사점 /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2019
15	노동패널자료 연구. V :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이경희	한국노동연구원	2019
16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 경찰청	경찰청	2020
17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동성애 유발요인에 대한 과학적 탐구 / 길원평	라운누리	2014
18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 /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밝은생각	2012
19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진보 VS 보수향후 30년의 조건 / 박세길	추수밭	2018
20	保險學會誌 v.122 /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20
21	산업집적지와 지역고용 창출 /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2019
22	성역할 인식과 성별분업 및 여성의 경제활동 사이의 관계 분석 /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2019
23	소비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2019
24	여성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2019
25	운명이다 : 노무현 자서전 / 노무현재단	돌베개	2019
26	인간혁명의 시대: 윤석만 기자의 미래리포트 / 윤석만	가디언	2018
27	인포메이션: 인간과 우주에 담긴 정보의 빅히스토리 / 글릭, 제임스	동아시아	2017
28	자영업 경영상황의 동태적 변화 연구. II /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2019
29	재난안전 관리체계 취약점 분석과 감사시사점 : 사업관리 및 정보통신·공동구 분야를 중심으로 / 최낙혁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30	제조업 업종별 일터혁신 연구 /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1	통일백서 v.2020 / 한국, 통일원	통일부	2020
32	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 IX /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2019
33	한국아동복지학 v.69-1 /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2020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4	공정 채용의 현실과 개선방안 /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2019
35	科學技術年鑑 v.2019 /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36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 송인섭 전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의 자전적 에세이 / 송인섭	북랩	2019
37	손정의: 300년 왕국의 야망 / 스기모토 다카시	서울문화사	2018
38	식품의약품안전백서. 202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39	지역과 일터혁신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2019

[문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0	열린책들 세계문학. 127: 살라미나의 병사들 : 하비에르 세르카스 장편소설 / Cercas, Javier 세르카스, 하비에르 김창민	열린책들	2010
41	행복편지: 10TH EDITION. 10 / 박시호	데이터포스트	2016
42	행복편지: 여섯번째 이야기. 6: in London / 박시호	데이터포스트	2012
43	행복편지: 열한 번째 이야기. 11 / 박시호	데이터포스트	2017

■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명	발간처	간기
1	B.F.L (2020. 5) 101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격월간

	서명	발간처	간기
2	LAW & TECHNOLOGY 16권2호 (20. 3)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142	(주)리걸타임즈	월간
4	거래가격 593호	(주)거래가격	월간
5	고시계 759호, 760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6	공법연구 48집 3호	한국공법학회	계간
7	국제법학회논총 65권 1호	대한국제법학회	부정간
8	기업법연구 34권 1호 (80호)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9	노동법률 2020. 5.	中央經濟社	월간
10	문학사상 572호	문학사상사	월간
11	법과 사회 6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반년간
12	법과 정책연구 20집 1호	한국법정책학회	반년간
13	한국아동복지학 69권 1호	한국아동복지학회	계간
14	법학 61권 1호 (194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계간
15	사법행정 제61권 제5호 (713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6	산업재산권 6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연3회
17	상사판례연구 33집 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계간
18	속보삼일총서 1568호, 1569호, 1570호 + 부록	삼일회계법인	주간
19	시사저널 1594, 1595, 1596, 1597	독립신문사	주간
20	신동아 2020. 6., 별책부록	(주)동아피디에스	월간
21	월간 인사관리 2020. 6.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22	월간조선 2020년 6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20. 06.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24	이코노미스트 1532호, 1533호, 1534호, 1535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25	조세총서 DB 2020. 5.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6	종합물가정보 595호 I,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서명	발간처	간기
27	주간조선 N2606, 2607, 2608, 2609	조선일보사	주간
28	지방자치법연구 20권 1호(65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반년간
29	출판저널 V517	(주)출판저널문화미디어	월간
30	피해자학연구 28권 1호	한국피해자학회	반년간
31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권 1호	한국도서관·정보관리학회	계간
3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권 1호	한국비블리아학회	계간
33	해사법연구 32권 1호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
34	헌법학연구 26권 1호	한국헌법학회	계간
35	형사법연구 32권 1호	한국형사법학회	계간
36	환경법연구 42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연3회

■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명	발간처	간기
1	刑事辯護 N102	現代人文社	계간
2	(旬刊)商事法務 N2219 ~ N2229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3	登記情報 60권 제5호	民事法情報センター	월간
4	N.B.L 1161호 ~ 1169호	商事法務研究會	반월간
5	ジュリスト 1545호	有斐閣	격주간
6	パテント(Patent) V73 1호(856), 2호(857), 3호(858), 4호(859)	日本弁理士會	월간
7	國家學會雜誌 133권 3-4호	有斐閣	격월간
8	金融·商事判例 N1589, N1582 ~ 1585, N1590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9	金融法務事情 2136호, 2137호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10	勞動法律旬報 1958호, 1959호	勞動旬報社	순간
11	勞動判例 N1211 ~ 1218	産業勞動調査所	반월간

	서명	발간처	간기
12	登記研究 866호	テイハン	월간
13	文藝春秋 2020. 6월	文藝春秋	월간
14	民事訴訟雜誌 V66(2020)	民事訴訟法學會	연간
15	發明 V117 N5	發明協會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V73 N5	きょうせい	월간
17	法律時報 92권 5호	日本評論社	월간
18	法學セミナー V65-6 (785호)	日本評論社	월간
19	法學教室 476호	有斐閣	월간
20	法學論叢 186권 5·6호	有斐閣	월간
21	法學協會雜誌 137권 4호	有斐閣	월간
22	世界法年報 39호	世界法学会	연간
23	銀行法務21 856호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24	日本教育法學會年報 49호	日本經濟法學會	연간
25	自治研究 96권 4호, 5호	良書普及會	월간
26	判例タイムズ 1470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27	判例時報 N2435, N2436, 2437	判例時報社	순간
28	判例地方自治 N456, N458	きょうせい	월간
29	憲法問題 V31(2020)		연간
30	現代消費者法 N46	民事法研究会	계간
32	戸籍 981호	テイハン	월간
32	世界 N933	岩波書店	월간
33	戸籍時報 N794, N795	日本加除出版	월간

■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명	발간처	간기
1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 Bd245H3-4	Max Schmidt-Romhild KG	격월간
2	Betriebs-Berater (BB)J75 H14 ~ H20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3	Bundesgesetzblatt : Part 1 & Part 2 I.Nr.17, 18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	Der Spiegel 2020 Nr. 16, 17, 18, 19, 20	Spiegel	주간
5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3 N1 ~ N9	Kohlhammer	반월간
6	Droit Social 2020 N4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7	Europarecht J55 H2	Nomos-Verl	격월간
8	Family Court Review VOL58 N1	Blackwell	계간
9	Gol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7 H1, H2, H3, H4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월간
10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2020 H4	Stollfuß	월간
11	Juristen Zeitung (JZ)J75 H7 ~ H9	J.C.B. Mohr	반월간
12	L'actualitéJuridiqueDroitAdministratif(AJDA) 2020 N13, N14	Dalloz	주간
13	Nj Neue Justiz J74 H4, H5	Nomos	월간
14	Rabels Zeitschrift : fu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84 H2	J. C. B. Mohr	계간
15	Rechtspfleger Studienhefte J44 H1, H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16	Recueil Le Dalloz 2020 N13, N14, N15	Dalloz	주간
1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20. 5.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18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EDITIONS DALLOZ	계간

	서명	발간처	간기
	Compare) 2019 N4		
19	The Economist V434 N9185, V435 N9190 ~ N9194	The Economist Group	주간
20	The Law quarterly Review Vol 136 (2020 January)	Sweet & Mawell	계간
21	TIME 5. 11, 5. 18, 5. 25	Time Asia	주간
22	Versicherungsrecht J71 H7, H8, H9	Versicherungswirtschaft e. V.	순간
23	WM (Wertpapier-Mitteilungen : 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Ba) J74 N14 ~ N19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24	Wuw (Wirtschaft Und Wettbewerb; Zeitschrift Für Kartellrecht, W) J70 H4, H5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25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B184 H2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격월간
26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ZvglRWiss) B118 H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27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ZWeR) J18 H1	RWS Verlag	연5회